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문화관 2층 (73동 223호)

전화: 880-8055 / 5073 팩스: 886-8056

e-mail: helpyou@snu.ac.kr

홈페이지: <http://help.snu.ac.kr>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개소 3주년 기념 심포지엄



대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정책

- 일시: 2003년 12월 22일(월) 오후 2:00~5:30
- 장소: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주최: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개소 3주년 기념 심포지엄

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와 정책

▶ 일시 : 2003년 12월 22일 (월)

오후 2:00 - 5:30

▶ 장소 :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주최 :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인 사 의 말 씀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상담소가 개소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개소 당시의 설레임과 감동이 아직 우리 가슴속 깊이 남아있습니다. 성폭력 없는 캠퍼스를 희망하는 교내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대학의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상담소는 남녀평등이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캠퍼스의 교육 현장과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담소가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서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인해 더욱 감회가 깊어집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상담소는 대학 특성에 맞는 상담 모델을 개발하고, 사건의 조사 처리 체계를 합리화 하며, 다양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등 활동 영역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에 <대학내 성폭력 실태와 정책>이란 주제로 우리 상담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은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특성을 규명하고 대학 상담소의 올바른 위상과 활동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상담소의 연구를 의뢰받아 대학생들의 성의식과 캠퍼스 성폭력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 본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연구팀을 비롯하여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개소 3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행사가 우리나라 대학 상담소의 발전과 미래를 기약하는 뜻깊은 나눔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인사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03년 12월 22일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장

김 은 경

심포지엄 일정

제 1 부 개 회 식 (2:00-2:20)

인 사 : 김 은 경 (서울대 성희롱, 성폭력상담소장)

축 사 : 백 충 현 (서울대 대학원장)

제 2 부 주제발표 및 토론 (2:20-4:30)

■ 주제 1. 서울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폭력 경험

사 회 : 김 혜 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 표 : 박 명 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권 태 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 현 숙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토 론 : 이 찬 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상담부장)

김 수 정 (서울대여성연구소선임연구원)

■ 주제 2. 국내외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 정책과 상담기구의 위상

사 회 : 양 현 아 (서울대 법대 교수)

발 표 : 신 상 숙 (서울대 성희롱, 성폭력상담소 전문위원)

박 정 미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토 론 : 신 현 옥 (여성부 정책2담당관)

김 영 희 (연세대 성폭력상담실 전임상담원)

제 3 부 종 합 토 론 (4:30-5:30)

사 회 : 양 현 아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폭력 경험*

박명규(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권태환(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현숙(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1. 서론

1) 조사연구 개관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의 의뢰를 받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2003년 9월 서울대학생(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16개 단과대학 및 대학원과 협동과정, 특수대학원을 포함한 2003년 1학기 등록생 총 22,237명을 기준으로 하여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별 등록생 수와 그 성비에 따라 1500부의 설문지를 할당 배포하여 실시했다. '2003년 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지를 조사원들이 학과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에서 배포하고 응답자 본인이 직접 밀봉 봉투에 설문지를 넣어 봉인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1459부를 수거하여 불성실 응답지를 제외한 144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봉인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설문지 수거율과 응답율은 매우 높았다.

(2) 조사응답자의 인적 특성

조사응답자의 인적 특성은 성별, 단과대(대학원), 연령, 입학년도, 군복무 경험, 종교, 현재 주거지, 주 성장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역, 부모 생존여부, 형제 구성, 결혼 여부, 가족 이외의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의 범위와 그 성비로 파악해 보았다. 본 조사에서는 기존에 다른 대학에서 실시했던 동종 조사들과는 달리 종교, 가족 이외의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의 범위와 그 성비라는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 변수들 중 분석과정에서 단과대와 대학원은 인문계와 이공계로 계열분류를 했고, 연령은 19세까지, 20-21세, 22-23세, 24-25세, 26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는 서울, 수도권, 중부(경기, 충청, 강원), 동남부(영남), 서남부(호남, 제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형제 구성은 동성형제자매, 이성형제자매, 동이성형제자매, 독자로 재분류했고, 그 이외의 변수는 설문지와 동일하다.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응답자 중 남학생은 878명으로 61.0%, 여학생은 549명으로

* 이 조사연구의 최종보고서는 현재 작성중이며 본 보고서는 잠정적인 내용정리에 해당한다. 보다 상세한 통계와 분석은 앞으로 나올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

38.1%다. 연령별로는 만 20-21세가 32.8%로 가장 많았고, 19세까지 19.6%, 22-23세가 19.1%, 24-25세가 12.2%로 가장 적었고, 26세 이상이 15.7%다. 조사응답자의 종교를 살펴보면, 없다가 44.8%, 불교 13.8%, 개신교 23.3%, 카톨릭 15.8%, 기타가 1.9%다. 주성장지는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가 59.7%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 11.9%, 중소도시 21.2%, 읍·면 5.1%, 외국인 경우가 1.6%다. 출신 고등학교 소재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39.2%, 수도권이 11.6%, 중부가 11.3%, 동남부가 26.8%, 서남이 8.7%다. 소속 계열별 분포는 인문계열이 612명으로 42.5%, 이공계열이 813명으로 56.5%다.

표 1-1. 응답자의 특성

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성별	남	61.0 (878)	주성장지	특별시, 광역시	59.7 (860)
	여	38.1 (549)		대도시	11.9 (172)
	무응답	0.9 (13)		중소도시	21.2 (305)
	계	100.0 (1440)		읍,면	5.1 (73)
연령	19세 까지	19.6 (282)	출신고교	외국	1.6 (23)
	20-21세	32.8 (472)		무응답	0.5 (7)
	22-23세	19.1 (275)		계	100.0 (1440)
	24-25세	12.2 (175)	소속계열	서울	39.2 (565)
	26세 이상	15.7 (226)		수도권	11.6 (167)
	무응답	0.7 (10)		중부	11.3 (162)
	계	100.0 (1440)		동남	26.8 (386)
종교	없음	44.8 (645)		서남	8.7 (125)
	불교	13.8 (199)		무응답	97.6 (35)
	개신교	23.3 (336)		계	100.0 (1440)
	카톨릭	15.8 (227)	인문계	인문계	42.5 (612)
	기타	1.9 (27)		이공계	56.5 (813)
	무응답	0.4 (6)		무응답	1.0 (15)
	계	100.0 (1440)		계	100.0 (1440)

남학생 878명 중 군복무 경험을 보면, 있는 경우가 23.7%, 없는 경우가 69.5%, 면제와 해당없음이 6.8%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9세까지, 20-21세까지, 22-23세까지의 남학생은 군복무경험자가 1.3%, 2.5%, 18.8%로 소수다. 24-25세는 57%, 26세 이상은 66.5%로 과반수 이상이다. 연령별 군복무 경험은 연속적이지 않고 22-23세와 24-25세 사이에 큰 격차를 가지고 있다. 군 복무 경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19세까지 1.0%, 20-21세 3.4%, 22-23세 15.5%, 24-25% 29.5%, 26세 이상이 50.7%다.

표 1-2 남학생 중 군복무 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연령대

	19세까지	20-21세	22-23세	24-25세	26세 이상	계
있다	1.0(2)	3.4 (7)	15.5(32)	29.5(61)	50.7(105)	100(207)
없다	25.5(155)	42.3(257)	20.8(126)	6.4(39)	4.9(30)	100(607)
면제/해당 없음	1.7(1)	27.1(16)	20.3 (12)	11.9(7)	39.0(23)	100(59)
계	18.1(158)	32.1(280)	19.5(170)	12.3(107)	18.1(105)	100(873)

조사응답자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양친 모두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93.4%이고, 편부모 생존인 경우가 6.0%다. 형제자매 관계를 보면 동성형제자매만 있는 경우가 12.4%, 이성형제자매만 있는 경우가 24.4%, 동이성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53.7%이고, 독자는 8.5%였다. 남학생들 중 순위 누나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7.0%이고, 여동생이 있다는 응답자가 14.4%인데 반해, 여학생들 중 오빠가 있는 경우는 5.8%이고, 남동생이 있는 경우는 17.8%나 되어 대조적이었다. 결혼여부를 보면, 전체 조사응답자 중 기혼자는 3.9%였다.

표 1-3. 응답자의 가족관계

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양친생존 여부	편부모생존	6.0 (87)	배우자 (결혼) 여부	예	3.9 (56)
	양친생존	93.4 (1345)		아니오	95.6 (1377)
	무응답	0.6 (8)		무응답	0.5 (7)
	계	100.0 (1440)		계	100.0 (1440)
형제자매 관계1	독자	8.5 (123)	형제자매 관계 2	남자-손위여자	17.0 (245)
	동성형제자매	12.4 (178)		남자-손아래여자	14.4 (207)
	이성형제자매	24.4 (351)		여자-손위남자	5.8 (83)
	동이성형제자매	53.7 (773)		여자-손아래남자	17.8 (257)
	무응답	1.0 (15)		무응답	45.0 (648)
	계	100.0 (1440)		계	100.0 (1440)

가족 이외에 가장 가깝게 접촉하고 있는 집단은 과/반 동료(동아리 포함)가 66.4%로 압도적이고, 단과대학 내의 집단이 10.2%, 단과대를 넘어선 범위의 교내집단이 9.0%, 학교 밖의 집단이 14.0%다. 가장 가깝게 접촉하고 있는 집단의 성별 구성은 남성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8.2%, 주로 남성으로 구성된 경우가 32.6%, 남녀 성비가 비슷한 경우가 43.4%, 주로 여성인 경우가 14.1, 여성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1.4%다.

표 1-4. 가족 이외에 가장 가깝게 접촉하고 있는 집단

항목	구분	% (빈도)	항목	구분	% (빈도)
가장 가까운 접촉 집단	과/반 동료들 (과/반 동아리 포함)	66.4(956)	가장 가까운 접촉 집단의 성별구성	남성으로만 구성	8.2(118)
	단과 대학 내의 집단	10.2(147)		주로 남성	32.6(469)
	단과대를 넘어선 범위의 교내 집단 (총학, 본부 동아리...)	9.0(130)		남녀 성비가 비슷	43.4(625)
	학교 밖의 집단	14.0(201)		주로 여성	14.1(203)
	무응답	0.4(6)		여성으로만 구성	1.4(20)
	계	100(1440)		무응답	0.3(50)
				계	100(1440)

2. 서울대학생의 성지식 및 성의식

1) 성 지식과 성인식

성에 대한 지식과 인식에 대해서 섹스, 성병, 피임, 임신, 낙태의 5개 항목에 대한 지식의 정도, 성에 대한 지식의 주요 습득 경로, 성교육 경험 유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1) 성 지식

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섹스와 피임, 임신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성병과 낙태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성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섹스, 성병, 피임, 낙태에 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5개 항목 모두에서 지식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복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군복무 경험이 없는 응답자나 비해당자(여성)보다 모든 성지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면제자 역시 군복무 경험자와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는 연령에 따른 허위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2-1. 성지식 정도(단위: %)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그저 그렇다	잘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안다	계
섹스	1.0	13.9	44.0	31.6	9.6	100.0
성병	4.4	36.5	37.7	16.2	5.2	100.0
피임	2.4	19.0	41.3	30.7	6.6	100.0
임신	1.8	17.5	42.3	31.5	6.9	100.0
낙태	5.2	30.1	39.7	19.8	5.2	100.0

표 2-2. 성별, 연령별 성지식 정도(평균)

성에 대한 지식	성별		연령구분					전체 평균
	남자	여자	19세까지	20-21세	22-23세	24-25세	26세 이상	
섹스	3.5	3.1	3.1	3.3	3.4	3.5	3.6	3.35
성병	2.9	2.6	2.5	2.7	2.9	3.0	3.2	2.81
피임	3.3	3.1	3.0	3.1	3.2	3.3	3.5	3.20
임신	3.2	3.2	3.1	3.2	3.3	3.2	3.5	3.24
낙태	2.9	2.9	2.6	2.8	3.0	3.0	3.2	2.90

(2) 성 지식 습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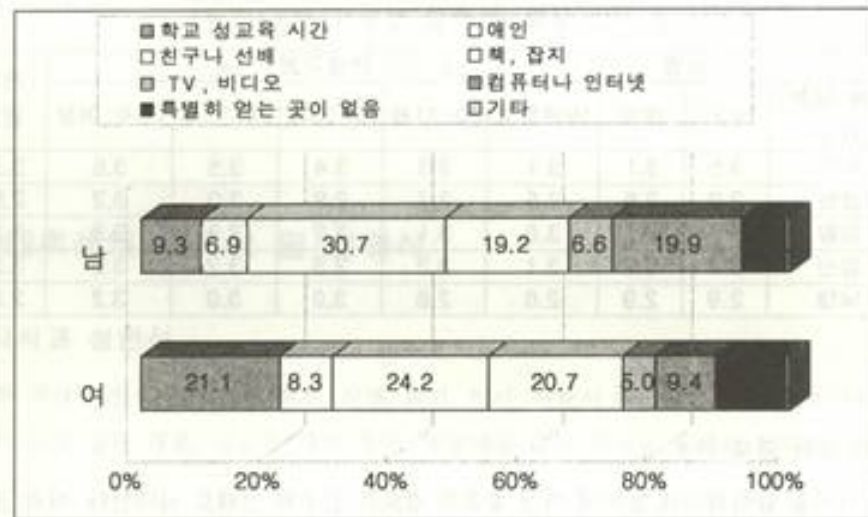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로는 친구와 선배로 나타난다. 아래 표에서 보듯 친구와 선배가 28.3%, 책과 잡지가 19.6%, 컴퓨터나 인터넷이 15.8%, 성교육은 그 다음으로 13.8%다. 하지만 이차적 습득경로에서는 컴퓨터나 인터넷이 가장 높은 36.7%를 얻고 있어서 이 부분의 비중이 전체적으로는 친구나 선배로부터 얻는 지식 못지 않게 높은 비중을 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식적인 성교육을 통한 지식습득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얻는 곳이 없다는 응답자도 많아 각기 8.3%와 12.6%나 된다.

표 2-3. 일차 성지식 습득 경로

항목	구분	% (빈도)	항목	구분	% (빈도)
성지식습득 경로 1	학교 성교육 시간	13.8(197)	성지식습득 경로 2	학교 성교육 시간	2.7(34)
	매인	7.4(106)		매인	3.3(42)
	친구나 선배	28.3(404)		친구나 선배	13.6(173)
	책, 잡지	19.6(280)		책, 잡지	15.7(200)
	TV, 비디오	6.0(86)		TV, 비디오	13.7(174)
	컴퓨터나 인터넷	15.8(226)		컴퓨터나 인터넷	36.7(467)
	특별히 얻는 곳이 없다	8.3(118)		특별히 얻는 곳이 없다	12.6(160)
	기타	0.6(9)		기타	1.8(23)
	Total	100.0(1426)		Total	100.0(1273)

습득 경로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일차 경로는 친구나 선배가 30.7%, 컴퓨터와 인터넷이 19.9%, 책과 잡지가 19.2%, 성교육 9.3%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 친구나 선배가 24.2%, 학교 성교육 시간이 21.1%, 책과 잡지가 20.7%, 컴퓨터나 인터넷이 9.4%다. 남학생이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여학생들은 학교 성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 성지식 습득 경로(일차)



(3) 성교육 경험

성교육에 대한 경험을 성 지식의 5개 항목에 대해서 각기 질문하였다. 응답자 중의 85%가 성교육 경험이 있었고, 15%는 전혀 없었다. 섹스에 대한 성교육 경험은 43%, 성병 교육 경험은 41.1%, 피임 교육 경험은 가장 높아서 65.9%, 임신 교육 경험은 63.7%, 낙태 교육 경험은 45.2%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피임, 임신, 섹스, 성병, 낙태의 순으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았고, 여학생의 경우는 피임, 임신, 낙태, 섹스와 성병의 순이었다. 낙태에 대한 교육은 여학생들에게 더 강조해서 이뤄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성교육을 받은 경험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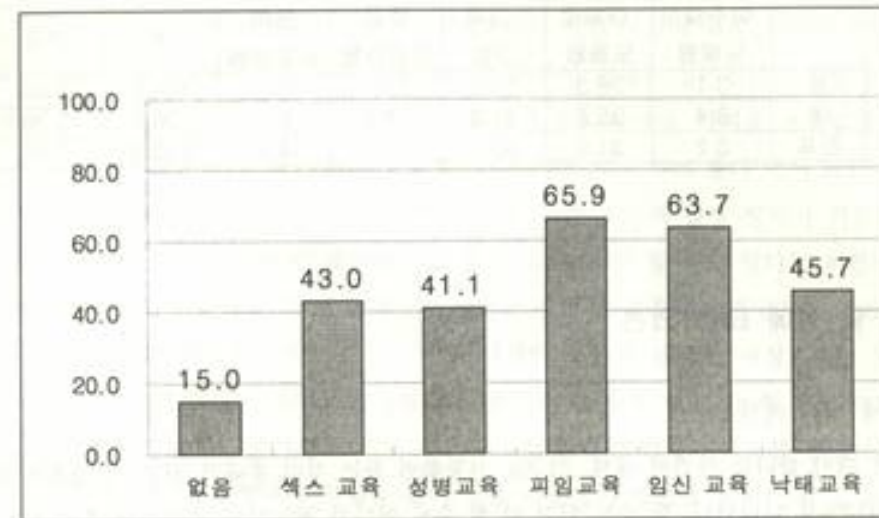


표 2-4. 성별 성교육 정도

항목	빈도		순위	
	남	여	남	여
없음	150	61	6	6
섹스 교육	396	208	3	4
성병 교육	372	207	4	5
피임 교육	535	393	1	1
임신 교육	507	388	2	2
낙태 교육	340	296	5	3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성교육 경험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2%,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는 31.2%여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비율이 3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40.1%,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1.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난다. 부정적인 응답보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좀 더 많았지만 '그저 그렇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서 보듯 성교육만으로 성지식의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더욱 성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성교육 경험 도움 정도를 5점 척도에 가중치를 두어 평균값을 환산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 3.0인데 반해 여학생의 경우 3.20으로 나타난다.

표 2-5. 성별 성 교육 도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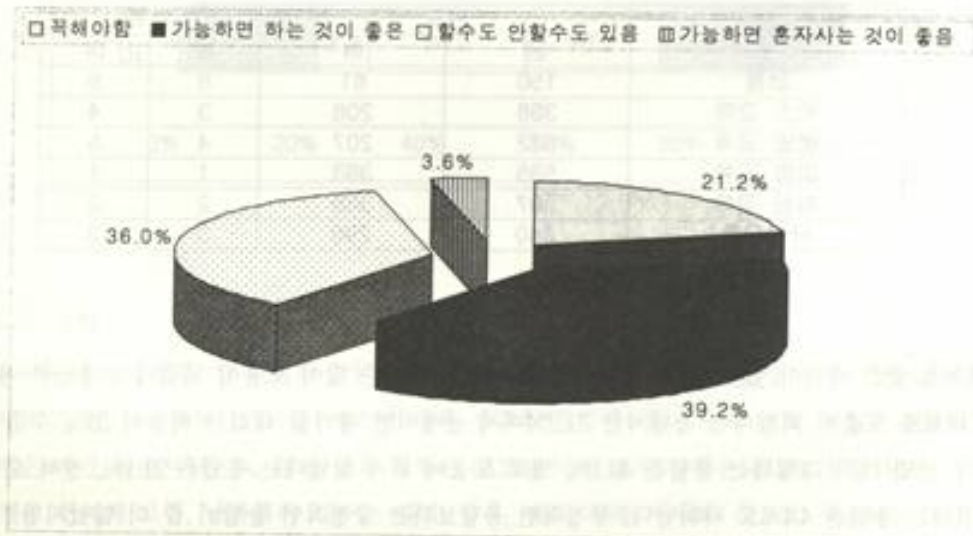
	아주않이 도움됨	대체로 도움됨	그저 그런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계	평균
남	3.1	28.3	39.4	23.7	5.6	100.0	3.00
여	3.4	35.6	41.3	17.3	2.5	100.0	3.20
전체	3.2	31.2	40.1	21.1	4.4	100.0	3.08

2) 결혼 및 성에 대한 의견

(1) 결혼에 대한 의견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21.2%,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가 39.2%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60.4%로 나타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36%이고,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3.6%로 적었다.

그림 2-3.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에 대한 의견은 성별,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의 성비, 그리고 성비에 따라 구분한 단과대별, 그리고 계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성별로 구분해 보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남학생의 28.7%가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8.9%만이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는 남학생이 28.8%, 여학생이 47.6% 응답하여 대조적이었다. 계열별로도 결혼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인문계열은 15.2%, 이공계열은 25.7%가 응답한 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인문

계열은 42.8%, 이공계열은 30.5%가 응답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흥미있는 결과의 하나는 가까운 접촉집단의 성별 구성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가족 이외에 가장 가까이 지내는 접촉집단의 성별구성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이 높아질수록 결혼에 대한 유보적인 견해가 높게 나타난다. 가까운 접촉집단이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결혼을 꼭 해야 한다가 37.3%,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역시 37.3%로 74.6%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가까운 접촉 집단의 남성 성비가 적은 집단일수록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늘어났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주로 남성으로 구성된 집단'과 접촉하는 응답자는 25.6%, '남녀 성비가 비슷한 집단'과 접촉하는 응답자는 18.1%, '주로 여성인 집단'은 12.3%, '여성으로만 구성된 집단'과 접촉하는 응답자는 10%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응답은 각기 28.1%, 41%, 45.8%, 50%로 증가했다. 이는 결혼이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로 접촉하는 집단의 젠더구성형태에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6. 결혼에 대한 의견

항목	구분	꼭 해야함	가능하면 해야함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것이 좋음	계
성별	남자	28.7	39.1	28.8	3.4	100.0
	여자	8.9	39.4	47.6	4.0	100.0
소속계열	인문계	15.2	38.1	42.8	3.9	100.0
	이공계	25.7	40.3	30.5	3.4	100.0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 성별구성	남성으로만 구성	37.3	37.3	21.2	4.2	100.0
	주로 남성	25.6	43.5	28.1	2.8	100.0
	남녀 성비가 비슷	18.1	37.3	41.0	3.5	100.0
	주로 여성	12.3	36.5	45.8	5.4	100.0
	여성으로만 구성	10.0	35.0	50.0	5.0	100.0
전체		21.2	39.2	36.0	3.6	100.0

(2) 혼전 섹스에 대한 의견

혼전 섹스에 대한 의견은 옳지 않다가 19.3%,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방하다가 51.6%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무방하다가 18.8%어떠한 조건 없이도 무방하다가 10%로 나타난다. 이것은 섹스에 있어서 결혼 여부를 절대적인 조건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매우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랑이나 상호이해가 전제된다면 상당수가 혼전 섹스에 대해 개방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림 2-4. 혼전섹스에 대한 의견



하지만 혼전 섹스에 대한 의견에도 성별, 입학년도별, 종교별, 거주형태별, 주 성장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인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허용적이다. 남학생은 몰지 않다가 13.8%,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방하다에 55.8%,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무방하다 17.1%, 어떠한 조건 없이도 무방하다에 13.3%가 응답했고, 여학생은 몰지 않다가 28.2%,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방하다에 45.3%,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무방하다에 21.2%, 어떠한 조건 없이도 무방하다에 5.3%가 응답했다. 입학년도별로 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비율이 높아진다.

표 2-7. 혼전 섹스에 대한 의견(성별, 입학년도별, 종교별)

항목	구분	몰지 않음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방함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무방함	어떠한 조건 없이도 무방함	계
성별	남자	13.8	55.8	17.1	13.3	100.0
	여자	28.2	45.3	21.2	5.3	100.0
입학년도 구분	99학번이전	12.8	55.4	13.6	18.2	100.0
	00학번	10.9	49.7	23.1	16.3	100.0
	01학번	21.2	47.5	19.9	11.4	100.0
	02학번	20.3	51.6	20.9	7.1	100.0
	03학번	23.3	52.5	18.1	6.2	100.0
종교	없음	10.1	59.9	16.2	13.7	100.0
	불교	20.2	49.5	21.7	8.6	100.0
	개신교	36.6	37.8	18.5	7.1	100.0
	카톨릭	20.3	49.8	23.8	6.2	100.0
	기타	11.1	48.1	25.9	14.8	100.0
전체		19.4	51.4	18.9	10.3	100.0

한편 성의식에 있어서 종교변수가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종교의 경우 혼전섹스는 몰지 않다가 10.1%,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방하다에 59.9%,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무방하다 16.2%, 어떠한 조건 없이도 무방하다에 13.7%가 응답해서 가장 개방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종교를 가진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종교집단은 개신교 집단이다. 개신교의 경우 몰지 않다가 36.6%가 응답해서 무종교의 10.1%는 물론이고 카톨릭의 20.3%나 불교의 20.2%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거주형태, 주 성장지에 따른 차이는 일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거주형태별로 보면, 자취생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의견을, 자택에 살고 있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주거형태에 의한 차이인지는 불분명하다. 성장지에 따른 차이에서 가장 뚜렷한 현상은 외국에서 성장한 학생들에게서 매우 분명한 보수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의 학생들에게서 상대적으로 결혼관에 대한 변화, 개방성이 크게 나타남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외국에서 성장한 학생들의 계층적, 종교적, 문화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 보아야 좀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8. 혼전 섹스에 대한 의견(현재거주지, 주 성장지, 출신고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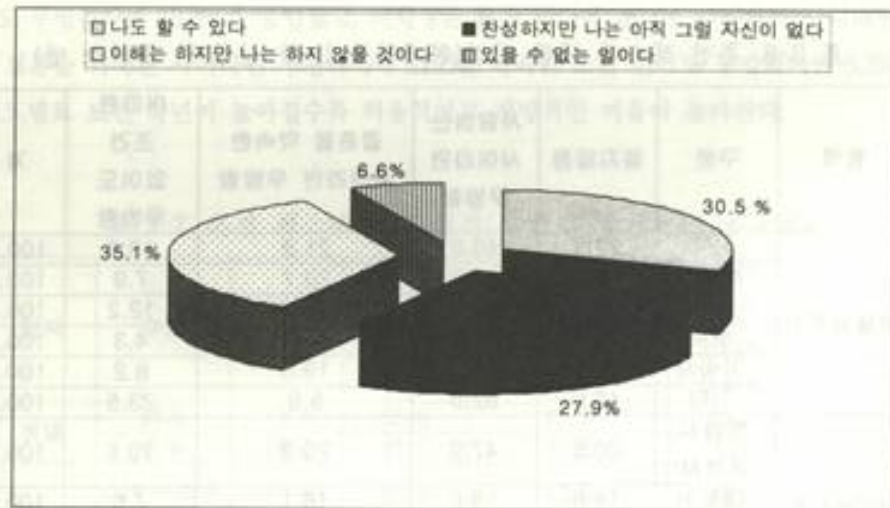
항목	구분	몰지 않음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방함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무방함	어떠한 조건 없이도 무방함	계
현재거주지	자택	22.0	46.0	21.8	10.3	100.0
	전학집	13.2	55.3	23.7	7.9	100.0
	자취	16.1	57.5	14.3	12.2	100.0
	하숙	19.6	57.6	18.5	4.3	100.0
	기숙사	19.6	52.5	19.6	8.2	100.0
주 성장지	기타	17.6	52.9	5.9	23.5	100.0
	특별시, 광역시	20.6	47.9	20.9	10.6	100.0
	대도시	14.6	59.6	18.1	7.6	100.0
	중소도시	17.4	56.7	15.7	10.2	100.0
	읍, 면	17.8	56.2	15.1	11.0	100.0
출신고 소재지역	외국	30.4	52.2	4.3	13.0	100.0
	서울	21.5	45.7	21.6	11.2	100.0
	수도권	18.7	56.6	13.9	10.8	100.0
	중부	20.5	55.9	18.0	5.6	100.0
	동남	17.2	53.1	20.6	9.1	100.0
서남		14.4	59.2	11.2	15.2	100.0
Total		19.2	51.4	19.1	10.3	100.0

출신 고등학교 소재 지역별로 보면, 서남지역 출신 응답자들이 옳지 않다에 14.4%로 가장 낮은 응답율을,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방하다와 어떠한 조건 없이도 무방하다에 각기 59.2%와 15.2%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무방하다에 가장 낮은 응답율인 11.2%의 응답율을 보임으로써,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응답자들의 경우 옳지 않다에 21.5%의 응답율을 보여준데서 드러나듯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3) 동거에 대한 의견

최근에 신세대들 사이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동거에 대한 의견을 보면, 나도 할 수 있다가 30.5%, 찬성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다가 27.9%, 이해는 하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가 35.1%,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6.6%로 나타난다. 본인의 행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거행위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5. 동거에 대한 의견



동거에 대한 의견에는 성별, 입학년도, 종교, 현재 거주지, 주 성장지, 출신 고등학교 소재 지역, 양친 생존 여부, 형제자매관계, 결혼 여부,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의 범위, 접촉집단의 성별 구성 등 거의 대부분의 인적 사항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선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동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남학생은 나도 할 수 있다가 37.6%, 찬성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다에 26.3%, 이해는 하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에 29.7%, 있을 수 없는 일이다에 6.5%가 응답했다. 여학생은 각기 19.5%, 29.9%, 43.8%, 6.8%의 응답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동거에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게 나타난다. 입학년도별로 보면 역시 학년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의견이 보

인다. 갓 대학에 입학한 03학번의 동거찬성 비율 24.0%에 비해 99학번 이상의 고학년층의 찬성비율은 37.0%로 높아지는데, 이는 세대적 차이보다도 대학 내에서의 개방적인 문화습득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종교별로 보면, 혼전 섹스에 대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종교가 없는 응답자들과 '기타'라고 응답한 층이 동거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종교를 가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가운데서도 개신교가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혼전 섹스에 관해서는 거의 같은 응답 경향을 보였던 불교와 카톨릭의 경우 동거에 대한 의견에서는 불교 신도가 카톨릭 신도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동거에 대한 의견(성별, 입학년도별, 종교별)

항목	구분	나도 할 수 있다	찬성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다	이해는 하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
성별	남자	37.6	26.3	29.7	6.5	100.0
	여자	19.5	29.9	43.8	6.8	100.0
입학년도구분	99학번이전	37.0	23.0	35.8	4.1	100.0
	00학번	36.5	25.7	29.1	8.8	100.0
	01학번	37.0	23.5	31.9	7.6	100.0
	02학번	28.2	30.1	33.7	8.0	100.0
	03학번	24.0	32.1	38.8	5.0	100.0
종교	없음	39.3	30.2	26.9	3.6	100.0
	불교	24.1	32.2	37.7	6.0	100.0
	개신교	20.2	20.5	47.0	12.2	100.0
	카톨릭	25.2	27.9	39.4	7.5	100.0
	기타	37.0	29.6	29.6	3.7	100.0
전체		30.5	27.8	35.2	6.6	100.0

거주형태별로 보면, 자취생들과 기숙사생들이 나도 할 수 있다가 각기 37.7%, 32%의 응답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자택이나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숙생들의 반응은 자취생들과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 성장지별로 보면 외국에서 성장한 응답자들은 동거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 가장 높게 나타나 양면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도시에서 성장한 응답자는 나도 할 수 있다가 34.3%, 찬성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다에 32.6%가 응답하여 총 66.9%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에는 4.7%만이 응답하여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임으로써, 혼전 섹스에 대한 의견에서와 마찬가지로 동거에 대한 의견에 가장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성장한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출신 고교 소재 지역별로 봐도, 역시 혼전 섹스에 대한 의견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남지역 소재 고교 출신자들이 가장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뒤로 수도권과 동남지방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도 서울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2-10. 동거에 대한 인식 (현주거지, 주성장지, 출신고지역 별)

항목	구분	나도 할 수 있다	찬성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다	이해는 하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
현재 거주지	자택	25.6	29.3	38.5	6.6	100.0
	친척집	23.7	36.8	36.8	2.6	100.0
	자취	37.7	26.7	28.3	7.4	100.0
	하숙	23.9	28.3	41.3	6.5	100.0
	기숙사	32.1	25.2	37.2	5.5	100.0
	기타	50.0	18.8	25.0	6.3	100.0
주 성장지	특별시, 광역시	28.6	27.4	36.8	7.2	100.0
	대도시	34.3	32.6	28.5	4.7	100.0
	중소도시	32.9	28.0	33.9	5.3	100.0
	읍, 면	32.9	24.7	35.6	6.8	100.0
	외국	39.1	26.1	21.7	13.0	100.0
출신고 소재지역	서울	26.2	28.0	37.9	7.8	100.0
	수도권	34.1	27.5	32.9	5.4	100.0
	중부	27.2	26.5	38.3	8.0	100.0
	동남	32.2	28.3	34.3	5.2	100.0
	서남	41.1	29.0	26.6	3.2	100.0
전체		30.2	28.0	35.4	6.4	100.0

양친 생존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양친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반응을 보인다. 형제자매관계별로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응답에 있어서 동성형제자매가 있는 응답자는 20.8%가 응답하여 가장 낮았고, 이성형제자매가 있는 응답자는 35.7%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으로써 대조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동성형제자매가 있는 가족구성에서 동거에 대한 거부감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지는 흥미있는 논의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 여부와 관련해 보면 미혼자가 결혼한 응답자보다 동거에 대해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표 2-11. 동거에 대한 인식(양친생존 여부, 형제자매 관계, 결혼여부별)

항목	구분	나도 할 수 있다	찬성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다	이해는 하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
양친생존 여부	편부모생존	37.9	19.5	35.6	6.9	100.0
	양친생존	30.0	28.5	34.9	6.6	100.0
형제자매 관계	독자	33.3	32.5	26.8	7.3	100.0
	동성형제자매	20.8	29.2	43.8	6.2	100.0
	이성형제자매	35.7	28.0	30.3	6.0	100.0
	동이성형제자매	30.2	26.3	36.7	6.7	100.0
결혼여부	예	21.8	32.7	34.5	10.9	100.0
	아니오	31.0	27.6	35.1	6.4	100.0
전체		30.6	27.8	35.0	6.6	100.0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별로도 동거에 대한 의견에 차이를 보였다. 접촉집단의 범위별로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응답은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이 과/반 동료인 경우는 28.3%, 단과대학 내 집단인 경우 33.6%, 단과대를 넘어선 교내 집단인 경우 35.4%, 학교 밖 집단인 경우 36.3%로 접촉집단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응답율이 높아졌다.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의 성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인 경우가 가장 적극적이어서 44.1%가 나도 할 수 있다에 응답했다. 반면에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인 경우에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응답율이 가장 낮아서 19.2%에 불과했다.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의 성비 중 남성이 줄어들면 나도 할 수 있다에 응답율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여성만으로 구성된 집단인 경우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보다 더 응답율이 높았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은 다른 한편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응답이 10%로 가장 높아 집단 내의 차이가 가장 컸다.

표 2-12. 동거에 대한 인식(가장 가까운 접촉집단, 그 집단의 성 구성별)

항목	구분	나도 할 수 있다	찬성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다	이해는 하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
가장 가까운 접촉단체	과/반 동료들 (과/반 동아리 포함)	28.3	29.7	36.2	5.9	100.0
	단과 대학 내의 집단	33.6	26.0	30.8	9.6	100.0
	단과대를 넘어선 범위의 교내 집단 (총학, 본부 동아리...)	35.4	22.3	36.2	6.2	100.0
	학교 밖의 집단	36.3	23.9	31.8	8.0	100.0
	학교 밖의 집단	36.3	23.9	31.8	8.0	100.0
가장 가까운 접촉 집단성별 구성	남성으로만 구성	44.1	20.3	31.4	4.2	100.0
	주로 남성	34.3	30.3	30.1	5.3	100.0
	남녀 성비가 비슷	28.9	27.0	36.2	7.9	100.0
	주로 여성	19.2	30.0	44.3	6.4	100.0
	여성으로만 구성	30.0	20.0	40.0	10.0	100.0
Total		30.6	27.9	35.0	6.6	100.0

(4) 동성애에 대한 인식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하나의 생활양식이라는 응답이 34.8%, 문제는 있지만 인정해 주어야 한다가 39.6%, 비정상적인 행동이다가 25.6%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성별, 계열별, 종교별로 차이가 크다. 우선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수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생활양식이다에 여학생은 37.9%, 남학생은 32.8%가 응답했고, 문제는 있지만 인정해 주어야 한다면 여학생이 43.1%, 남학생이 37.4%, 비정상적인 행동이다에는 남학생은 29.7%, 여학생은 19%가 응답했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 학생들이 같은 응답범주에 각각 41.7%, 36.7%, 21.5%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공계열 학생들은 각각 29.5%만이 하나의 생활양식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문제는 있지만 인정해 주어야 한다면 41.8%, 비정상적인 행동이다에 28.7%가 응답해서 인문계열학생들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아마도 동성애라는 것에 대한 직접경험에서 나타난 것이라기보다 현대문화의 특성에 대한 관심정도, 또는 관련된 현상들에 대한 논의의 빈도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2-13. 동성애에 대한 인식

항목	구분	하나의 생활양식	문제는 있지만 인정	비정상적인 행동	계
성별	남자	32.8	37.4	29.7	100.0
	여자	37.9	43.1	19.0	100.0
소속 계열	인문계	41.7	36.7	21.5	100.0
	이공계	29.5	41.8	28.7	100.0
종교	없음	43.1	36.9	20.0	100.0
	불교	36.9	41.5	21.5	100.0
	개신교	18.0	42.0	39.9	100.0
	카톨릭	31.4	43.2	25.5	100.0
	기타	55.6	29.6	14.8	100.0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 성별구성	남성으로만 구성	28.2	35.0	36.8	100.0
	주로 남성	33.0	40.1	26.9	100.0
	남녀 성비가 비슷	37.8	39.4	22.7	100.0
	주로 여성	32.2	43.1	24.8	100.0
	여성으로만 구성	47.1	23.5	29.4	100.0
전체		34.8	39.6	25.6	100.0

한편 종교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가 없는 응답자들과 기타 종교를 가진 응답자는 동성애를 생활양식으로 본다는 답에 각각 43.1%, 55.6%가 응답했고,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응답에는 각각 20%, 14.8%로 나타남으로써 동거에 대한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반면 종교를 가진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수용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개신교는 비정상적이라는 응답이 39.9%나 되고, 하나의 생활양식이라는 의견은 18%에 불과하여 불교나 카톨릭 신자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혼전섹스나 동거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종교변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의 성별 구성에 따라서도 동성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난다. 하나의 생활양식이라는 인식은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이 여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에서 가장 높아서 47.1%인 반면 남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의 응답자가 가장 낮아서 28.2%에 불과하여 아주 대조적이었다. 남녀 성비가 비슷한 집단은 37.8%로 평균보다 높았고, 주로 남성으로 구성된 집단과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의 응답자는 각각 33%, 32.2%로 유사했다.

3) 성문제에 대한 인식

성문제에 대한 인식은 (1)성폭력에 대한 통념, (2)성관계에 대한 태도, (3)성희롱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성에 관한 언술을 23개 제시하고, 이에 대해 5점 척도 상의 절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에 평정하게 하고, 각 응답범주에 1점 - 5점의 가중치를 두어 평균값을 구했다.

(1) 성폭력에 대한 통념

이번 조사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7개의 문항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여 성폭력에 대한 통념의 실태를 측정하였다. 환산한 평균값이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해 통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통념'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문항이 제시되었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강하게 견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별로 전체 평균을 보면 남학생이 2.41, 여학생이 2.23으로 나타난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는 더욱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여학생 역시 남학생과 현저하게 다르지 않은 의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난다'는 언술에 대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번, 3번, 6번, 7번 등의 문항에서는 성별로 인식의 차이가 뚜렷한데 대체로 성폭행에 있어서 피해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 저항이란 무엇인가 등을 둘러싼 상이한 인식차가 보인다. 이런 차이는 앞으로 교내의 성폭력을 둘러싼 갈등의 소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교육과 이해증진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부간의 성폭력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남녀간의 차이가 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가 성폭력을 당할 수는 없다'는 5번 언술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별로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데는 성별 차이가 없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4. 성문제에 대한 인식

구분	성에 관한 언술	평균		성별격차 (남자-여자)
		남	여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1.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난다	3.13	3.32	-0.19
	2.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2.38	1.93	0.45
	3. 여자들의 아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2.89	2.57	0.32
	4. 이성 교제 중에 성폭력이 성립할 수 없다	2.07	1.99	0.08
	5. 남자가 성폭력을 당할 수는 없다	1.90	1.88	0.02
	6. 강압적인 성행위라도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거나, 신체적인 수용이 일어난다면 성폭력이 아니다	2.33	2.11	0.22
	7. 부부 사이에는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	2.15	1.78	0.37
성관계에 대한 태도	평균	2.41	2.23	0.18
	8. 섹스에 대해 여자들은 겉으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한다.	2.30	1.79	0.51
	9.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	2.42	2.42	0
	10. 성적 접촉의 시도는 아무래도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70	2.57	0.13
성희롱에 대한 태도	평균	2.47	2.26	0.21
	11.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그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2.13	1.82	0.3
	12.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을 성희롱으로 여기는 것은 지나친 과민 반응이다.	2.65	1.87	0.78
	13. 성희롱에 대한 대부분의 고소, 고발 사건은 피해자의 경솔함이나 양심에서 비롯된다	2.19	1.68	0.41
	평균	2.32	1.79	0.54
	14. 성희롱과 성폭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2.35	2.01	0.34
	15. 성희롱은 개인들 간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13	1.76	0.37
	16. 성희롱은 심각한 사회문제	3.60	3.91	-0.31
	17. 성희롱을 고발한 피해자들은 종종 해자들보다 더 부당한 대우를 받음	3.68	3.98	-0.30
	18. 성희롱은 민사사건이라기보다는 형사사건에 해당.	3.40	3.66	-0.26
	19. 대부분의 성희롱은 성차별과는 무관하다	2.45	2.09	0.36
	평균	2.94	2.90	0.03
성희롱과 관련된 일반사항	20. 학교나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위해서라면 여성은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	3.07	2.48	0.59
	21. 실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대부분 관계 기관(상담소,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보고됨	2.17	2.04	0.13
	22. 성희롱은 권력과 관련된 문제	3.38	3.60	-0.22
	23. 동성 간에도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3.77	3.75	0.02
대 도	평균	3.09	2.97	0.13

(2) 성관계에 대한 태도

성관계에 대한 태도는 8번-10번의 3개 연술로 측정하였는데, 환산한 평균값이 높을수록 성관계에 대한 태도가 남성 중심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 평균값을 성별로 보면 남학생 2.47, 여학생 2.26으로 성관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학생이 좀 더 남성중심적이라 할 수 있으나 문항별로 편차가 크다. 9번 문항과 같이 여성의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에는 성별 차이가 전혀 없다. 하지만 8번 문항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남녀간의 매우 상이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 문항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태도를 이 중적인 것으로 평가해온 남성주의적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서도 이런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성희롱에 대한 태도

성희롱에 대한 태도는 ①피해자의 행동 및 책임(11번 -13번의 3개 연술), ②심각한 사회문제로의 인식 정도(14번 - 19번의 6개 연술), ③성희롱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20번 - 23번의 4개 연술)으로 나누어 1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① 피해자의 행동 및 책임 : 여기서는 환산된 평균값이 높을수록 성희롱을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고, 피해자들이 사소한 문제를 확대 해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피해자의 행동 및 책임에 대한 연술들 전체의 평균값을 보면, 남학생은 2.32, 여학생은 1.79로 남녀 사이의 격차는 0.54로 다른 범주의 전체 평균 격차보다 가장 격차가 크다. 성희롱을 피해자의 행동이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남학생들이 더 높은데, 특히 12번 연술의 경우 남녀 사이에 인식의 격차가 0.78로 성문제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23개의 연술들 중에서 가장 남녀 사이의 격차가 많은 것이다.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을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성희롱에 해당될 것인지에 대해 합의된 인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 앞으로 계속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② 심각한 사회문제로의 인식 정도 : 여기서는 성희롱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려는 태도에 대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15번 문항에서 보듯 성희롱을 개인간의 사적 문제로 보고 이를 사회적 쟁점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남학생에게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16번 문항과도 연결되는데 성희롱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는데 대해 여학생이 더욱 적극적이다. 18번 연술은 성희롱을 형사적인 문제로 보는 것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를 보여준다. 즉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더욱 형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성희롱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려는 경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다른 한편으로 성희롱과 성차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양자를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경우 구조적인 성차별과 성희롱의 연관성을 더욱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성희롱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 : 일반적인 성희롱에 대한 태도를 알아 보려는 문항들인데 문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20번 문항은 특히 남녀간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인데 여성의 '성

적 매력'에 대한 인식에서도 상당한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22번과 같이 성희롱을 권력과 관련된 현상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도 여학생쪽이 보다 강한 동의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간 정도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서 성문제에 대한 의식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성관계에 대한 태도, 성희롱에 대한 태도 전반에 걸쳐서 현저하게 부정적인 의식이나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 더 남성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점이 나타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성희롱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정하는 공통의 인식기반이 아직 불분명하여 갈등과 쟁점을 낳을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에 대한 막연한 이해를 어떻게 성희롱이라는 측면에서 명확하게 재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판단

조사응답자들의 성희롱,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가지 범주의 행동들에 대하여 평가를 하도록 했다. 세가지 범주는 각기 언어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행위, 비언어적이지만 물리적인 강제성은 동반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물리적인 신체적 가해가 이루어지는 행위로 각기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듯 이 세가지 범주에 대하여 응답자의 판단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남녀의 평가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물리적 범주에서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상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체로 강제적인 신체접촉이나 신체접촉의 요구가 성폭행 내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공통의 인식기반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8번에서 보듯 '불을 쫓거나 쓰다듬기, 엉덩이를 치거나 팔짱을 끼는 행위'와 같은 것을 20%가 넘는 남학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반면 여학생들은 10%정도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견 사소해 보이는 행위들에서 남녀간의 인식차가 긴장으로 발전할 개연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비신체적 차원에서 행동을 둘러싼 평가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언어적 유형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보면, 남녀간에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성적으로 모독하는 별명이나 호칭의 사용'에 대하여 남학생은 52.6%가 성희롱이라고 보면서도 25.4%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반면 여학생은 66.5%가 성희롱으로 보고 성희롱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11.0%에 불과하다. 또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에 대해서도 남학생은 42.8%만 이를 성희롱으로 인식하고 33.1%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보는데 비해 여학생은 61.5%가 성희롱이라고 간주하고

성희롱이 아니라는 응답은 14.3%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61.6%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응답한데 비해 여학생은 다만 37.4%만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성별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평가에서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성의 신체를 위 아래로 훑어보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하는 행동'에 대하여 남학생의 36.7%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보는데 비해 여학생은 단지 9.4%만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60.9%가 이를 성희롱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사무실이나 동아리방에서 누드 사진이나 포르노를 보는 행동, 술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한 평가도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편차는 앞서 살펴본 인식상의 차이와 함께 앞으로 학내 성폭력 및 성희롱을 둘러싼 갈등의 한 소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발생한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문제 못지 않게,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성문제와 관련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은 물론, 막연한 가해/피해의 양분법을 넘어서서 성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와 결합하는 지적인 작업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5. 행동에 대한 판단

	행동판단		성희롱	성폭력	둘중 하나	둘다 해당	둘다 아님	계
언어적	1.성적으로 모독하는 별명이나 호칭의 사용표현	전체	58.1	7.1	7.4	7.7	19.8	100.0
		남	52.6	7.8	7.3	6.8	25.4	100.0
		여	66.5	5.9	7.5	9.1	11.0	100.0
	2.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음담패설	전체	50.4	9.4	9.0	5.7	25.4	100.0
		남	42.8	10.4	8.7	5.1	33.1	100.0
		여	61.5	8.0	9.4	6.6	14.3	100.0
	3.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말이나 행동	전체	27.1	9.7	6.9	4.3	51.8	100.0
		남	19.4	9.9	5.6	3.4	61.6	100.0
		여	38.4	9.4	8.8	5.7	37.4	100.0
비언어적	4. 이성의 신체를 위 아래로 훑어보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하는 행동	전체	49.6	8.7	9.2	6.5	26.0	100.0
		남	42.3	8.2	8.4	4.4	36.7	100.0
		여	60.9	9.4	10.5	9.8	9.4	100.0
	5. 함께 이용하는 사무실이나 동아리방에서 누드 사진, 포르노그라피 등을 보거나 게시하는 것	전체	43.3	19.7	15.7	8.2	13.1	100.0
		남	42.0	17.9	16.3	6.9	16.9	100.0
		여	45.2	22.6	14.9	10.1	7.2	100.0
	6.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나친 관심과 집착을 보이거나 전화,이메일, 방문등을 반복하는 것	전체	25.6	22.2	14.4	7.3	30.5	100.0
		남	23.0	22.6	16.4	4.7	33.3	100.0
		여	29.3	21.6	11.6	10.8	26.7	100.0
물리적	7. 술자리에서無理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	전체	47.6	21.3	12.0	7.2	12.0	100.0
		남	43.3	21.6	12.8	5.8	16.5	100.0
		여	53.5	20.7	10.8	9.1	5.8	100.0
	8. 불을 고집거나 쓰다듬기, 엉덩이를 치거나 팔뚝을 끼는 등의 행위	전체	33.5	28.9	11.1	9.6	16.9	100.0
		남	33.7	26.1	11.3	8.2	20.7	100.0
		여	33.2	32.8	10.7	11.5	11.8	100.0
	9.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키스, 포옹, 성기접촉 여부 등	전체	12.8	60.0	9.3	15.8	2.0	100.0
		남	13.7	59.9	9.6	14.6	2.2	100.0
		여	11.6	60.3	8.9	17.4	1.8	100.0
	10.권위를 빌미로 접근해서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행동	전체	15.4	58.8	9.1	15.8	0.8	100.0
		남	16.5	59.1	8.6	14.9	1.0	100.0
		여	13.7	58.4	10.0	17.4	0.5	100.0
	11. 모교지/MT나 등에서 바깥 등 으스스한 곳, 외진 곳에서 강제로 키스나 음을 만지는 행동	전체	11.2	63.1	9.4	14.7	1.6	100.0
		남	11.1	65.5	8.1	13.0	2.3	100.0
		여	11.3	59.5	11.3	17.4	0.5	100.0
	12. 데이트 할 때의 원치 않는 성관계(또는 미수에 그친 시도)	전체	2.9	69.2	8.8	14.6	4.6	100.0
		남	3.2	71.7	7.3	12.4	5.4	100.0
		여	2.4	65.2	11.1	17.9	3.4	100.0
	13. 동아리방, 연구실, 강의실 등 학교의 밀폐된 곳에 혼자 있을 때 발생한 강간 또는 강간미수	전체	0.8	75.4	4.5	18.4	0.8	100.0
		남	1.0	77.7	3.7	16.7	1.0	100.0
		여	0.5	71.7	6.0	21.2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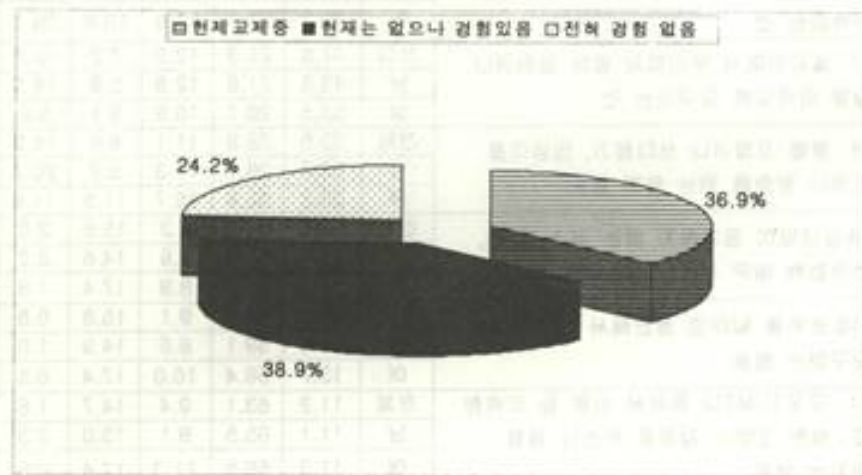
3. 서울대학생의 성경험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1) 이성·동성교제 경험

(1) 이성교제 경험

이성교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5.8%가 현재 교제 중이거나 현재는 교제하지 않지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교제 중인 응답자는 36.9%, 과거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8.9%다. 전혀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24.2%다. 이성교제 경험은 성별, 계열별, 종교, 주 성장지, 형제자매관계,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의 성비 등 주요 변수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 다른 지역에 비해 서남지역 고교 출신 응답자들, 편부모 생존 응답자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이 학교 밖의 집단인 응답자들이 다른 범주의 응답자들보다 좀 더 경험이 많은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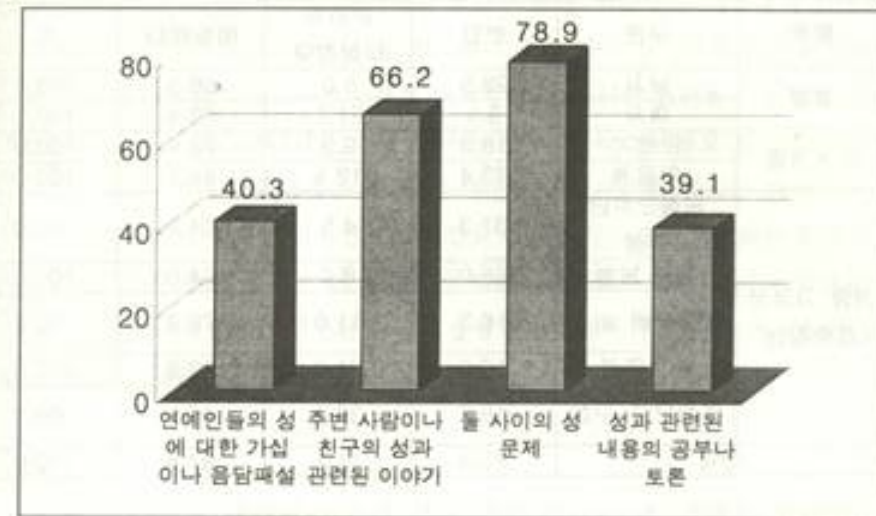
그림 3-1. 이성교제 여부



(2) 이성교제시 성과 관련된 대화와 갈등

이성교제를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이성 친구와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는 경우는 73.2%다. 이성교제시 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대화한 내용은 둘 사이의 성문제였다. 응답자 786명 중의 78.9%가 둘 사이의 성문제를, 66.2%가 주변 사람이나 친구의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다. 40.3%의 응답자가 연예인들의 성에 대한 가십이나 음담패설을, 39.1%가 성과 관련된 내용의 공부나 토론을 했다고 응답했다.

그림 3-2. 이성 교제시 성과 관련된 대화의 내용



이성친구와 성 관련 대화를 나눌 때 본인과 이성친구 양쪽 중 누가 주도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양쪽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67.6%다. 본인이 주도한다는 응답은 21.3%, 본인의 이성친구라는 응답은 11.1%다. 성 관련 대화를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가는 성별, 계열별,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의 성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28.5%가 본인, 5%가 이성친구, 66.5%가 비슷하다고 응답했고, 여학생의 경우는 9.5%가 본인, 21.1%가 이성친구, 69.4%가 비슷하다고 응답하여 대조적이었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 학생은 19.3%가 본인, 9.3%가 이성친구, 71.4%가 비슷하다고 응답했고, 이공계열 학생은 25.7%가 본인, 11.6%가 이성친구, 62.7%가 비슷하다고 응답하여 계열별 차이가 있었다.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의 성비별로 살펴보면, 남녀 성비가 비슷한 집단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72.8%로 가장 많았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이나 주로 남성으로 구성된 집단은 본인이라는 응답이 각각 31.3%, 28.0%로, 남녀 성비가 비슷한 집단의 16.3%나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의 16.0%, 여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의 18.2%보다 많았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의 응답자는 이성친구라는 응답이 36.4%로 어떤 범주의 응답자보다 현격히 많았고, 비슷하다는 응답은 45.5%로 현격히 적었다.

표 3-1. 성과 관련된 대화의 주도자(성별, 소속계열,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별)

항목	구분	본인	본인의 이성친구	비슷하다	계
성별	남자	28.5	5.0	66.5	100.0
	여자	9.5	21.1	69.4	100.0
소속계열	인문계	18.3	9.3	72.4	100.0
	이공계	23.4	12.5	64.1	100.0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	남성으로만 구성	31.3	4.5	64.2	100.0
	주로 남성	28.0	8.0	64.0	100.0
	남녀성비 비슷	16.3	11.0	72.8	100.0
	주로여성	16.0	21.3	62.8	100.0
	여성으로 구성	18.2	36.4	45.5	100.0
전체		21.3	11.1	67.6	100.0

표 3-2. 성과 관련된 의견의 갈등 여부(성별,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별)

항목	구분	있다	없다	계
성별	남자	18.3	81.7	100.0
	여자	26.8	73.2	100.0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	남성으로만 구성	14.8	85.2	100.0
	주로 남성	18.6	81.4	100.0
	남녀성비가비슷	23.3	76.7	100.0
	주로여성	22.8	77.2	100.0
	여성으로만구성	53.3	46.7	100.0
total		21.4	78.6	100.0

이성친구와 성에 관한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있었는가에 대해 있었다는 응답은 21.4%고, 없었다는 응답은 78.6%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18.3%, 여학생의 26.8%가 갈등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의 성비별로는 남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의 응답자의 14.8%, 주로 남성으로 구성된 집단의 응답자의 18.6%가 갈등이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의 응답자의 53.3%가 갈등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매우 대조적이었다.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성에 관한 이견으로 생기는 갈등에 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갈등이 있었다는 응답자들에게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질문했는데, 46.3%는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응답했고, 26.9%가 되도록 나의 의견을 따르도록 설득한다, 11.5%가 이성친구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무조건 내 의견을 주장한다는 응답은 6.2%에 불과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5.2%가 무조건 내 의견을 주장한다, 14.7%가 되도록 나의 의견을 따르도록 설득한다, 20.7%가 이성친구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의 7.2%가 무조건 내 의견을 주장한다, 39.6%가 되도록 나의 의견을 따르도록 설득한다, 1.8%가 이성친구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성과 관련된 대화의 주도자와는 반대로 여학생이 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남학생이 더 여자친구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의 성비별로 보아도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의 응답자는 33.3%가 이성친구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의 응답자는 이성친구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라는 응답자는 없었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의 응답자가 8.3%가 무조건 내 의견을 주장한다, 16.7%가 되도록 나의 의견을 따르도록 설득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여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의 응답자는 25%가 무조건 내 의견을 주장한다, 37.5%가 되도록 나의 의견을 따르도록 설득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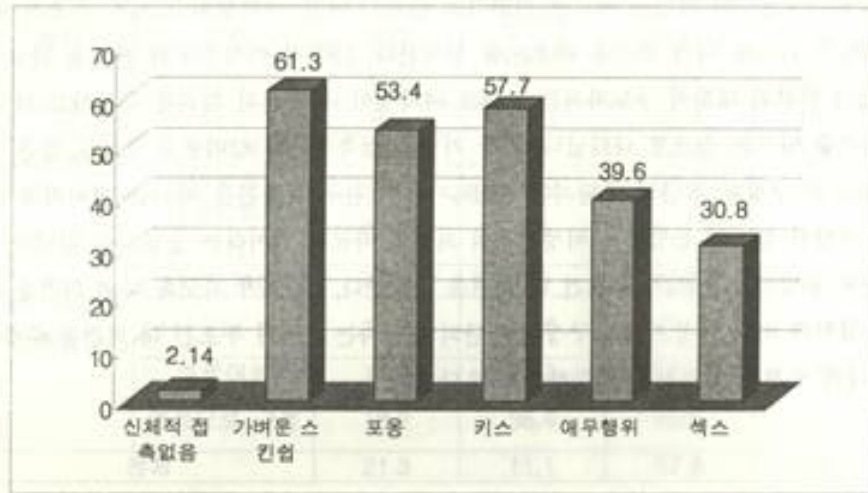
표 3-3. 성과 관련된 의견의 갈등 대처 방식(성별, 가까운 집단별)

항목	구분	무조건 내 의견을 주장한다	되도록 나의 의견을 따르도록 설득한다	이성친구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다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른다	계
성별	남자	5.2	14.7	20.7	49.1	100.0
	여자	7.2	39.6	1.8	43.2	100.0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	남성으로만 구성	8.3	16.7	33.3	33.3	100.0
	주로 남성	6.3	19.0	22.2	47.6	100.0
	남녀성비가비슷	4.5	29.1	6.4	48.2	100.0
	주로여성	5.9	35.3	2.9	47.1	100.0
	여성으로만구성	25.0	37.5	0.0	25.0	100.0
total		6.2	26.9	11.5	46.3	100.0

(3)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 경험

이성교제 경험자 1086명 중 1037명이 신체접촉 경험에 대해 응답했다. 응답자 중 61.3%는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을 경험했고, 57.7%는 키스를, 53.4%는 포옹을, 39.6%는 가슴 등의 신체부위에 대한 스킨십(애무행위)을, 30.8%는 섹스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신체접촉 경험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2.1%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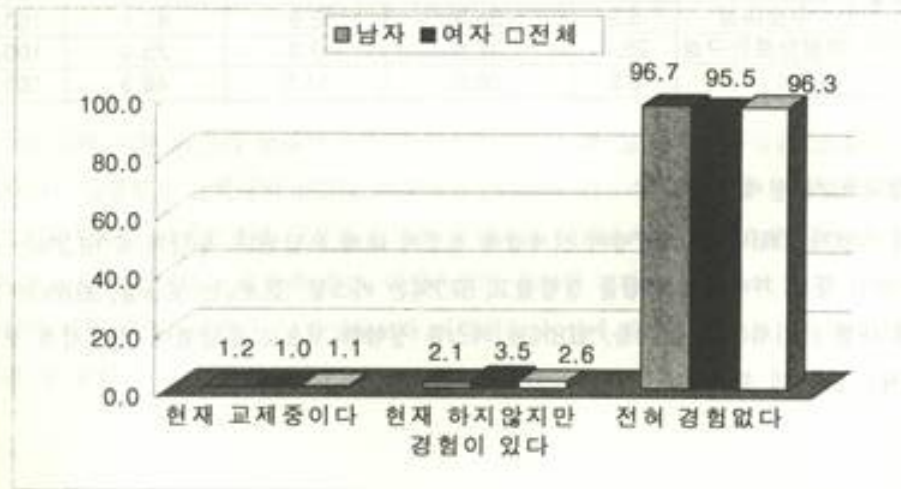
그림 3-3. 이성교제 시 신체 접촉 경험



(4) 동성교제 경험

동성교제 경험에 대해서, 응답자 1344명 중 현재 교제중이라는 응답은 1.1%다. 현재 하지 않지만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6%로, 전체 동성교제 경험자는 3.7%다. 성별로는 남학생 중에는 3.3%이고, 여학생 중에는 4.5%로 여학생이 약간 더 많다.

그림 3-4. 성별 동성교제 경험



2) 성 경험

(1) 섹스 경험 여부

전체 응답자 1440명 중 30.9%가 자의든 타의든 섹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응답자의 37%가, 여학생 응답자의 2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전까지의 8.6%, 20-21세의 21%, 22-23세의 39.8%, 24-25세의 51.4%, 26세 이상의 51.8%가 섹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입학년도별로 살펴보면, 03학번의 15.4%, 02학번의 26.1%, 01학번의 33.3%, 00학번의 39.0%, 99학번 이전의 57.3%가 섹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군복무 경험 여부별로는 군복무 경험자의 64.3%, 군복무미경험자의 겨우 50.2%가 섹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거주지별로는 자취생의 37.3%가 섹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서 다른 거주 형태의 응답자들보다 가장 많았고, 하숙생의 경우 23.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서 가장 적었다. 주 성장지별로는 읍·면의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다. 출신 고교 소재 지역별로는 서남지역 소재 고교 출신 응답자가 40.7%로 가장 섹스 경험이 많았는데 비해 수도권 소재 고교 출신 응답자는 24.4%로 가장 적었다. 양친 생존 여부별로 보면, 편부모 생존 응답자의 경우 46.5%, 양친 생존 응답자의 경우 29.8%가 섹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의 성비별로 보면, 남성으로만 구성된 집단의 응답자 중에는 41.9%가 섹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의 응답자 중에는 20.5%만이 섹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3-4. 섹스 경험 여부

항목	구분	없다	있다	계	구분	항목	없다	있다	계
성별	남자	63.0	37.0	100.0	가장 가까운 접촉 집단	남성으로만 구성	58.1	41.9	100.0
	여자	79.0	21.0	100.0		주로 남성	64.4	35.6	100.0
연령	19세까지	91.4	8.6	100.0		남녀 성비가 비슷	71.4	28.6	100.0
	20-21세	79.0	21.0	100.0		주로 여성	79.5	20.5	100.0
	22-23세	60.2	39.8	100.0	양친 생존 여부	여성으로만 구성	66.7	33.3	100.0
	24-25세	48.6	51.4	100.0		편부모생존	53.5	46.5	100.0
	26세이상	48.2	51.8	100.0		양친생존	70.2	29.8	100.0
입학년도	03학번	84.6	15.4	100.0	현재 거주지	자택	71.4	28.6	100.0
	02학번	73.9	26.1	100.0		친척집	71.1	28.9	100.0
	01학번	66.7	33.3	100.0		자취	62.7	37.3	100.0
	00학번	61.0	39.0	100.0		하숙	76.4	23.6	100.0
	99학번이전	42.7	57.3	100.0		기숙사	75.1	24.9	100.0
						기타	35.3	64.7	100.0
군복무 경험	있다	35.7	64.3	100.0	전체				
	없다	74.4	25.6	100.0			69.1	30.9	100
	면제/해당 없음	75.4	24.6	100.0					

섹스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에게 경험이 없는 주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응답자의 28.9%가 결혼 전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28.6%가 관계가 그 정도로 진척이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해서 다른 이

유들보다 확연히 많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관계가 그 정도로 진척되지 않아서 3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결혼 전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가 21.4%인데 반해 여학생의 경우 결혼 전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가 가장 많아서 38.3%, 관계가 그 정도로 진척되지 않아서 17.5%다.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의 경우 결혼 전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에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45%가 응답했다. 형제자매관계별로 보면, 동성형제자매만 있는 응답자의 경우 결혼 전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가 41.3%로 가장 많았고, 관계가 그 정도로 진척되지 않아서는 15.6%인 반면, 이성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결혼 전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는 22.1%, 관계가 그 정도로 진척되지 않아서는 39.3%로 상반되었다.

표 3-5. 섹스 경험이 없는 이유(성별, 종교, 형제자매관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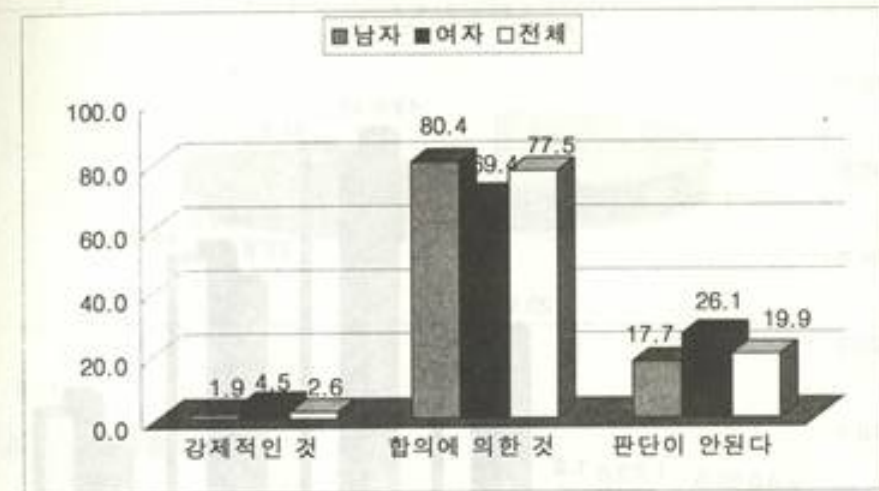
항목	구분	결혼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런 관계가 될까봐	관계가 그 정도로 진척되지 않아서	상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섹스 후에 마음이 변할 것 같아	임신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타	계
성별	남자	21.4	10.3	37.5	8.5	2.1	3.7	16.6	100
	여자	38.3	7.9	17.5	9.1	2.0	7.0	18.1	100
종교	없음	18.3	11.5	34.2	8.4	2.5	6.2	18.9	100
	불교	30.3	7.3	31.2	10.1	0.0	3.7	17.4	100
	개신교	45.0	6.4	21.3	6.9	3.0	4.5	12.9	100
	카톨릭	29.9	9.7	23.9	10.4	1.5	5.2	19.4	100
	기타	21.4	7.1	21.4	14.3	0.0	0.0	35.7	100
	독자	23.6	5.6	38.9	9.7	4.2	4.20	13.9	100
형제자매	동성	41.3	11.0	15.6	3.7	2.8	7.30	18.3	100
	형제자매								
	이성	22.1	9.2	39.3	4.9	2.5	3.70	18.4	100
	형제자매								
	동이성	29.2	9.5	26.2	11.4	1.4	5.30	16.9	100
	형제자매								
전체		28.9	9.2	28.6	8.7	2.0	5.2	17.2	100

(2) 최초의 섹스 경험과 섹스 상대

섹스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섹스 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더 구체화했다. 최초의 섹스 경험과 관련해서는 그 상황, 시기, 상대자를 질문했고, 지금까지 섹스를 했던 상대의 수를 질문했다.

최초의 섹스 상황에 대해서, 강제적인 것이었다는 응답은 2.6%,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응답은 77.5%, 판단이 안 된다는 응답은 19.9%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들의 경우 강제적인 것이었다는 응답이 4.5%로 남학생의 1.9%에 비해 많았고, 판단이 안 된다는 응답도 26.1%로, 17.7%인 남학생들에 비해 훨씬 많았다.

그림 3-5. 성별 최초의 섹스 상황



최초의 섹스 시기는 14세 이전이 0.5%, 14-16세가 1.9%, 17-19세가 16%, 20-21세가 가장 많은 41.8%, 22-25세가 28.9%, 25세 이후가 11.1%다. 최초의 섹스 시기는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고, 계열별로는 인문계열과 이공계열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인문계열 응답자의 경우 17-19세 사이가 20.9%, 20-21세가 43.5%, 22-25세 26.6%, 25세 이후가 7.3%인데 비해 이공계열은 17-19세는 12.4%, 20-21세는 40.6%, 22-25세는 30.5%, 25세 이후는 13.7%로 인문계열 응답자가 최초 섹스 시기가 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섹스 상대자는 이성인 친구나 동료, 선후배가 81.1%로 압도적이었고, 그 외의 응답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응답율이 낮았다. 매매춘업 종사자가 7.1%, 모르는 사람이 4%, 주변의 아는 사람(동네 아저씨, 아줌마, 오빠, 누나, 동생 --)이 3.1%, 동성인 친구나 동료, 선후배가 2.6%, 가족이나 친척이 1.7%, 학교 선생님이나 직장, 군대 등의 상사는 0.2%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이성인 친구나 동료, 선후배가 79%이고, 그 다음으로 매매춘업 종사자가 9.7%, 모르는 사람이 4.8%의 순인데 비해 여학생의 경우 이성인 친구나 동료, 선후배가 86.9%, 주변의 아는 사람이 5.6%, 가족이나 친척이 3.7%인 순이었고 매매춘업 종사자는 0%다.

그림 3-6. 소속계열별 최초의 섹스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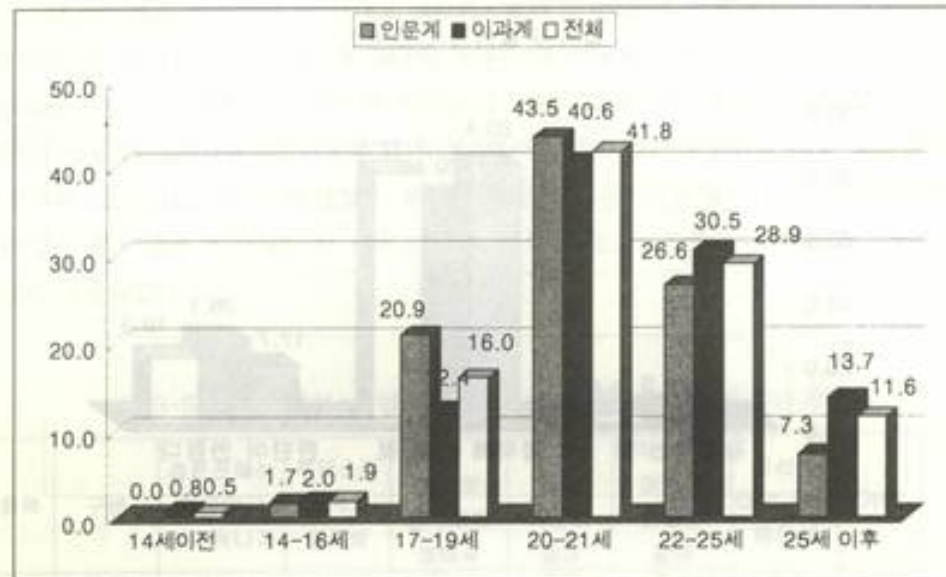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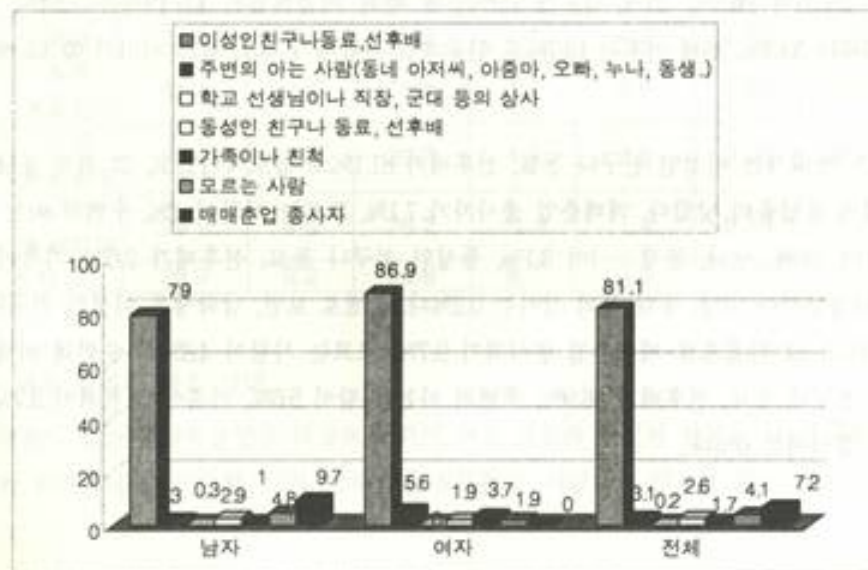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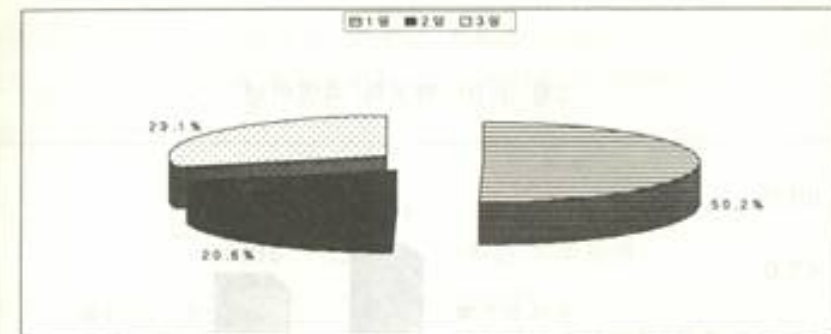


그림 3-7. 성별 최초의 섹스 상대자



지금까지 섹스를 했던 상대의 수를 응답한 402명의 응답자 중 상대가 1명이라는 응답자는 50.2%, 2명이라는 응답자는 20.6%, 3명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29.1%다.

그림 3-8. 섹스 상대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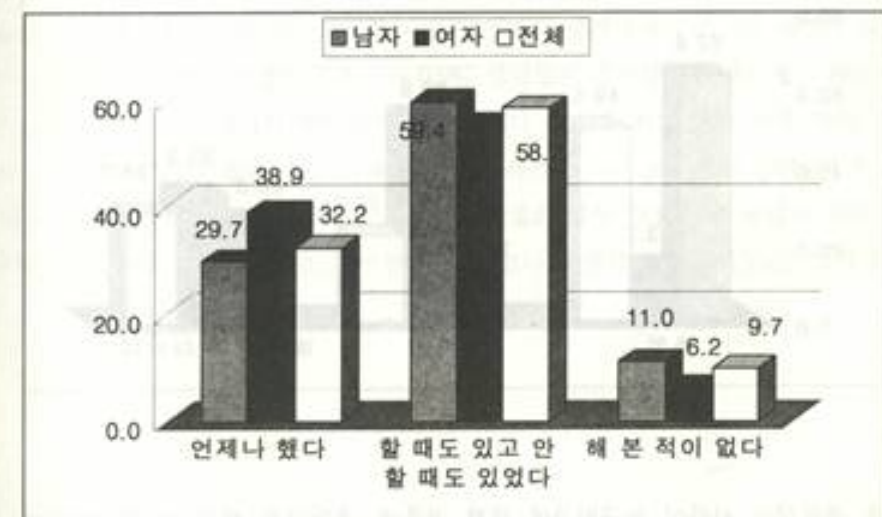


3) 피임과 낙태 경험

(1) 피임 경험 여부

섹스 경험자에게만 섹스 때 피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했다. 응답자 중 32.2%언제나 했다, 58.2%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다, 9.7%는 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피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중에서는 언제나 했다가 29.7%,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다가 59.4%, 해 본 적이 없다고 11.0%이고, 여학생 중에서는 언제나 했다가 38.9%,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다가 50.2%, 해 본 적이 없다고 6.2%다.

그림 3-9. 성별 피임여부



피임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최초의 피임연령을 질문하였다. 최초의 피임연령은 14-16세

가 1.1%, 17-19세가 13.3%, 20-21세가 40.3%, 22-25세가 36.2%, 26세 이상이 9.1%다.

그림 3-10. 최초의 피임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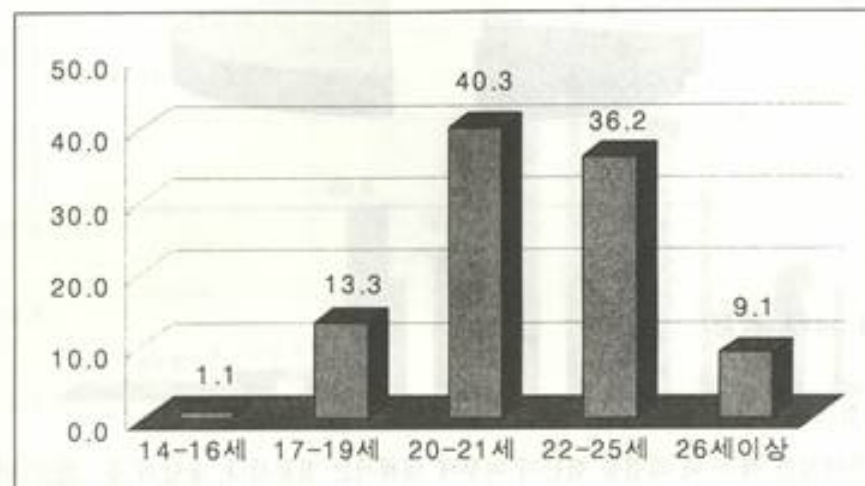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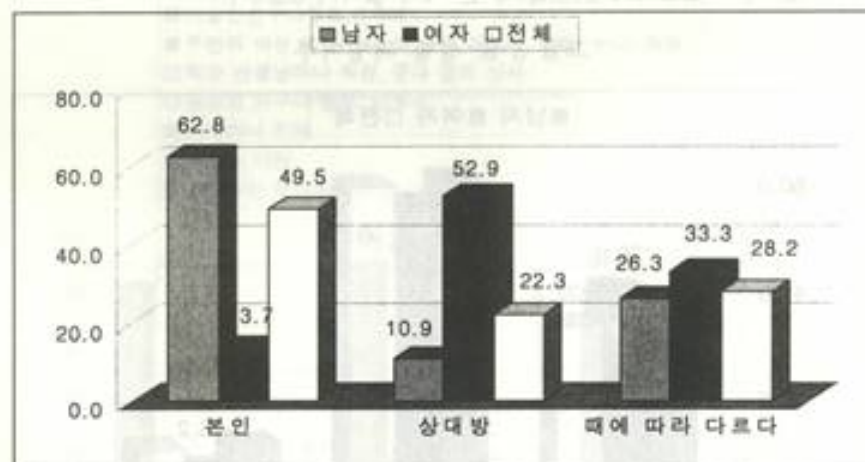


그림 3-11. 성별 주 피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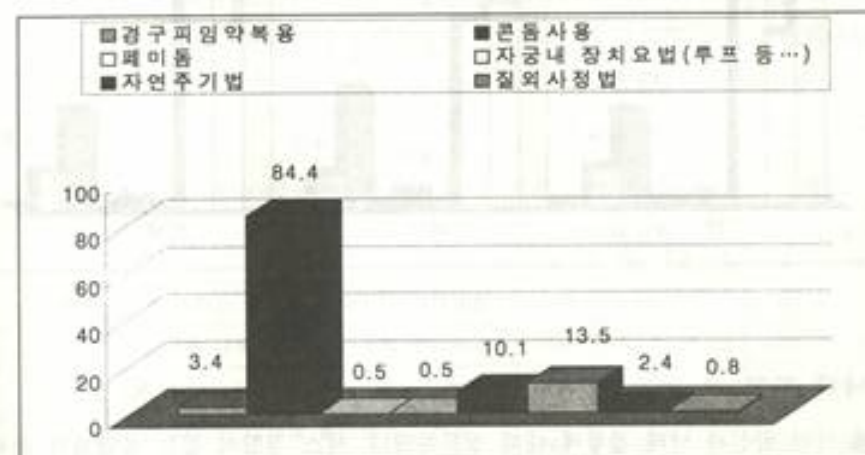


주로 피임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9.5%는 본인이라고 응답했고, 22.3%는 상대방이라고 응답했다. 8.2%의 응답자는 때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성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 본인이라는 응답이 62.8%, 상대방이라는 응답이 10.9%, 때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26.3%이고, 여학생의 경우 본인이 13.7%, 상대방이 52.9%, 때에 따라 다르다

가 33.3%다. 피임에 대한 준비는 여학생보다는 주로 남학생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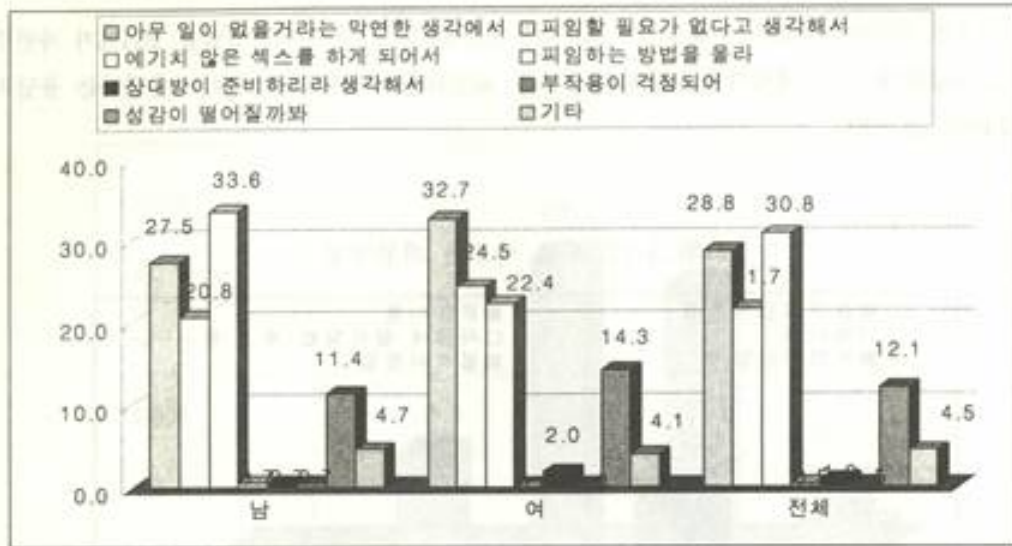
주로 사용한 피임방법으로는 응답자 중 84.4%가 콘돔을, 13.5%가 질외사정법을, 10.1%가 자연주기법이라고 응답했다.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사후 피임약을 주 피임방법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3.4%, 2.4%로 소수였다.

그림 3-12. 주로 사용한 피임방법



피임을 하지 않는 응답자에게 피임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이유로는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서가 28.8%, 피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21.7%, 예기치 않은 섹스를 하게 되어서가 30.8%, 피임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0.5%, 상대방이 준비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가 1.0%, 부작용이 걱정되어서가 0.5%, 성감이 떨어질까 봐가 12%다.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 역시 성별로 차이가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은 예기치 않은 섹스를 하게 되어서가 33.6%이고, 그 다음이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서가 27.5%다. 여학생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은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가 32.7%이고, 피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가 24.5%로 남학생과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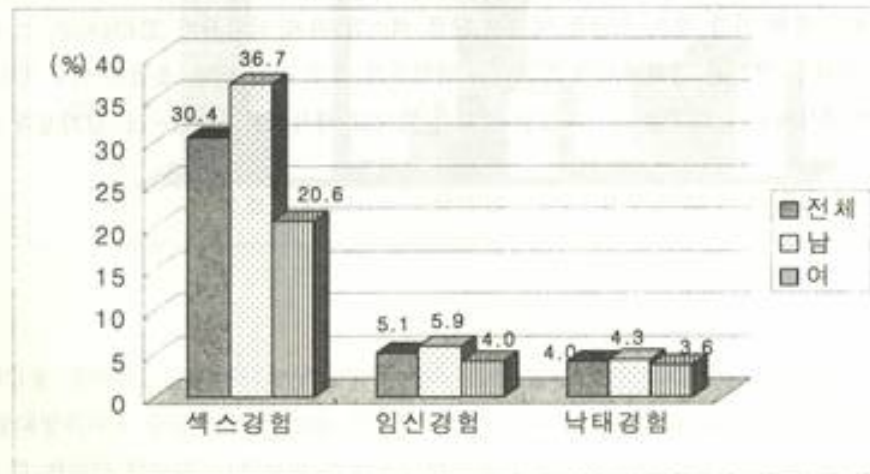
그림 3-13. 성별 피임하지 않은 이유



(2) 임신과 낙태 경험

섹스 경험에 이어 임신과 낙태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섹스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1440 명 중 30.4%인데 비해, 임신하거나 하게 한 경험은 5.1%이고, 낙태하거나 하게 한 경험은 4.0%다. 성별로 보면, 전체 남학생 중 임신하게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9%, 여학생 중 임신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0%다. 낙태 경험의 경우 남학생은 4.3%, 여학생은 3.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3-14. 섹스, 임신,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4) 성희롱·성폭력 경험

(1) 성희롱·성폭력 경험

성희롱·성폭력 경험은 13개의 행동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해본 경험(=가해경험), 당해본 경험(=피해 경험), 그 상대방의 지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13개의 성희롱·성폭력 행동에 대한 제시는 언어적 유형 3개(1번-3번), 비언어적 유형 4개(4번-7번), 물리적 유형 6개(8번-13번)였다.

먼저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해경험자와 피해경험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시된 각 행동별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응답자가 본 조사의 전체 응답자 1440명 중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 가해/피해 경험자를 성별로 분석해보았다.

표 3-6. 성희롱·성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응답수와 퍼센트

구분	행동	가해경험			피해경험		
		N	%	평균%	N	%	평균%
언어적 유형	1.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이나 호칭의 사용표현	144	10.00	15.00	183	12.71	20.53
	2.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응답태설	204	14.17		258	17.92	
	3. 여성다운, 남성다운을 강요하는 말이나 행동	300	20.83		446	30.97	
비언어적 유형	4. 여성의 신체를 위 아래로 훑어보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하는 행동	281	19.51	6.70	223	15.49	9.03
	5. 함께 이용하는 사무실이나 동아리방에서 누드 사진, 포르노그라피 등을 보거나 게시하는 것	34	2.36		57	3.96	
	6.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나친 관심과 집착을 보이거나 전화, 이메일, 방문등을 반복하는 것	34	2.36		122	8.47	
	7. 술자리에서無理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	37	2.57		118	8.19	
물리적 유형	8. 불을 끄집거나 쓰다듬기, 엉덩이를 치거나 팔을 끼는 등의 행위	102	7.08	1.12	192	13.33	1.50
	9.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키스, 포옹, 성기접촉 애무 등	17	1.18		78	5.42	
	10. 권위를 빌미로 접근해서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행동	8	0.56		23	1.60	
	11. 모꼬지/MT나 등에서 바깥 등 으스스한 곳, 외진 곳에서 강제로 키스나 몸을 만지는 행동	10	0.69		25	1.74	
	12. 데이트 할 때의 원치 않는 성관계 (또는 미수에 그친 시도)	23	1.60		44	3.06	
	13. 동아리방, 연구실, 강의실 등 학교의 일부분 곳에 혼자 있을 때 발생한 강간 또는 강간미수	6	0.42		9	0.63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양자 모두 언어적 유형의 경험이 가장 많고, 비언어적 유형은 그 다음이고, 물

리적 유형의 경험은 가장 적다.

가해경험 중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인 것은 언어적 유형에 속하는 3번인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전체 조사응답자의 20.83%가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 다음이 비언어적 유형의 대표적 행동인 4번으로, 이성의 신체를 위 아래로 훑어보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하는 행동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조사응답자의 19.51%다. 물리적 유형 중에서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라고 할 수 있는 8번의 응답율이 다른 행동의 경우보다 훨씬 높아서 7.08%다. 그 외의 물리적 유형의 가해경험자는 0.42%-1.60% 정도다. 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율은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해경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 중 가장 많은 것은 가해경험과 마찬가지로 3번이다. 전체 응답자의 30.97%가 이런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다.

표 3-7. 성희롱 성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구분	행동	가해경험		피해경험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언어적	1.성적으로 모독하는 별명이나 호칭의 사용표현	81.3	18.8	50.3	49.7	100.0
	2.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음담패설	80.4	19.6	41.5	58.5	100.0
	3.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말이나 행동	76.7	23.3	45.5	54.5	100.0
비언어적	4. 이성의 신체를 위 아래로 훑어보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하는 행동	89.7	10.3	25.1	74.9	100.0
	5. 함께 이용하는 사무실이나 동아리방에서 누드 사진, 포르노그라피 등을 보거나 게시하는 것	82.4	17.6	38.6	61.4	100.0
	6.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나친 관심과 접촉을 보이거나 전화, 이메일, 방문등을 반복하는 것	88.2	11.8	24.6	75.4	100.0
	7. 술자리에서無理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	94.6	5.4	25.4	74.6	100.0
물리적	8. 볼을 꼬집거나 쓰다듬기, 엉덩이를 치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	73.5	26.5	33.3	66.7	100.0
	9.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키스, 포옹, 성기접촉 여부 등	88.2	11.8	20.5	79.5	100.0
	10. 권위를 빌미로 접근해서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행동	75.0	25.0	43.5	56.5	100.0
	11. 모꼬지/MT나 등에서 바깥 등 으스스한 곳, 외진 곳에서 강제로 키스나 몸을 만지는 행동	90.0	10.0	28.0	72.0	100.0
	12. 데이트 할 때의 원치 않는 성관계 (또는 미수에 그친 시도)	95.7	4.3	18.2	81.8	100.0
	13. 동아리방, 연구실, 강의실 등 학교의 일대인 곳에 혼자 있을 때 발생한 강간 또는 강간미수	83.3	16.7	55.6	44.4	100.0

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율은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해경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 중 가장 많은 것은 가해경험과 마찬가지로 3번이다. 전체 응답자의 30.97%가 이런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서 남녀가 각기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가해경험은 남학생이, 피해경험은 여학생이 더 많다. 가해경험은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여성 가해경험도 역시 적지 않다. 각 가해행동의 경험을 성별로 나누었을 때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물리적 유형 중 가벼운 신체적 접촉인 8번으로 26.5%다. 언어적 유형의 경우 가해경험 중 여성의 경험이 약 20% 전후를 차지했다.

피해경험을 성별로 나눠보면, 가해경험에 비해 여성들의 피해경험이 현격히 높아진다. 그러나 한편 남성 피해경험 역시 많은데, 성적으로 모독하는 별명이나 호칭 사용인 1번과 혼자 있을 때 발생한 강간 또는 강간미수인 13번의 경우 여성의 피해경험보다 남성의 피해경험이 더 많았다. 1번을 포함한 언어적 유형의 경우 남성의 피해경험이 여성의 피해경험보다 많거나 여성의 피해경험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비언어적인 유형 중에서는 5번의 함께 이용하는 사무실이나 동아리 방에서 누드 사진, 포르노그라피 등을 보거나 게시하는 행동의 피해경험 중 남성이 38.60%로 다른 경험보다 많았고, 13번을 포함한 물리적 유형 중에서는 13번 이외에 10번의 권위를 빌미로 접근해서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는 행동의 피해경험 중에서는 남성 응답자가 43.48%로 다른 피해행동에 대한 경험들보다 많았다.

이러한 성별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면, 기존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통념 중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라는 통념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각 행동별로 응답자가 가해한 상대방의 지위를 성별로 다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적 유형의 1번-3번은 모두 가해한 상대방 중 본교 남학생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본교 여학생이다. 1번 행동의 가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가해한 상대방은 본교 남학생이 40%, 본교 여학생이 20.9%이고,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가해한 상대방이 본교 남성이라는 응답이 남녀 모두 가장 많아서 각기 40.9%, 36.4%다. 가해한 상대방이 본교 여학생이라는 응답은 남성응답자는 22.7%, 여성 응답자는 13.6%다. 3번의 경우, 남성 응답자들은 본교 남학생에게보다는 본교 여학생들에게 더 가해경험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비언어적 유형 중 4번의 경우 남녀 응답자 모두가 각기 이성인 본교 남학생과 본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가해한 경험이 가장 많았다. 남성응답자 중 상대방이 본교 남학생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8%이지만, 본교 여학생이라는 응답은 40.4%로 39.3%의 여자 외부인이라는 응답보다도 약간 더 많아서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응답자들의 경우, 남자 외부인이 3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8.1%인 본교 남학생이다. 그리고 여성 응답자는 본교 여학생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9.4%로 적지 않았다.

표 3-8. 응답자가 가해한 상대방의 지위

구분	가해 상대방 지위	성별	N	본교 남학생	본교 여학생	남자 교수	여자 교수	남자 교직원	여자 교직원	남자 외부인	여자 외부인	모름	계
언어적	1.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이나 호칭의 사용표현	전체	105	40.0	20.9	-	0.9	-	0.9	14.5	18.2	4.5	100.0
		남	84	40.9	22.7	-	1.1	-	-	15.9	14.8	4.5	100.0
		여	21	36.4	13.6	-	-	-	4.5	9.1	31.8	4.5	100.0
	2.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음담패설	전체	168	35.2	21.4	0.5	1.0	0.5	1.0	16.3	17.3	6.6	100.0
		남	130	34.4	23.4	0.6	1.3	0.6	1.3	14.9	16.2	7.1	100.0
		여	38	38.1	14.3	-	-	-	-	21.4	21.4	4.8	100.0
	3. 여성다운, 남성다운을 강요하는 말이나 행동	전체	260	30.0	28.7	3.3	0.7	-	0.3	15.2	17.2	4.6	100.0
		남	196	30.6	33.2	1.7	0.9	-	-	13.8	15.1	4.7	100.0
		여	64	28.2	14.1	8.5	-	-	1.4	19.7	23.9	4.2	100.0
비언어적	4. 여성의 신체를 위 아래로 흔들어보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하는 행동	전체	241	8.1	37.1	1.0	0.7	1.0	2.6	4.9	35.2	9.4	100.0
		남	214	5.8	40.4	0.4	0.7	0.7	2.9	1.5	39.3	8.4	100.0
		여	27	28.1	9.4	6.3	-	3.1	-	34.4	-	18.8	100.0
	5. 함께 이용하는 사무실이나 동아리방에서 누드 사진, 포르노그라피 등을 보거나 게시하는 것	전체	17	44.4	22.2	5.6	-	-	-	5.6	5.6	16.7	100.0
		남	13	46.2	23.1	-	-	-	-	7.7	7.7	15.4	100.0
		여	4	40.0	20.0	20.0	-	-	-	-	-	20.0	100.0
	6.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나친 관심과 집착을 보이거나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을 반복하는 것	전체	29	6.9	34.5	-	3.4	-	-	10.3	37.9	6.9	100.0
		남	24	-	41.7	-	4.2	-	-	4.2	45.8	4.2	100.0
		여	5	40.0	-	-	-	-	-	40.0	-	20.0	100.0
물리적	7. 술자리에서無理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	전체	30	21.2	45.5	6.1	3.0	-	-	9.1	12.1	3.0	100.0
		남	27	23.3	50.0	3.3	3.3	-	-	10.0	10.0	-	100.0
		여	3	-	-	33.3	-	-	-	-	33.3	33.3	100.0
	8. 불을 꼬집거나 쓰다듬기, 암덩이를 치거나 팔뚝을 찌는 등의 행위	전체	90	31.4	27.5	1.0	-	-	-	10.8	26.5	2.9	100.0
		남	65	32.0	30.7	-	-	-	-	9.3	28.0	-	100.0
		여	25	29.6	18.5	3.7	-	-	-	14.8	22.2	11.1	100.0
	9.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키스, 포옹, 성기접촉 여부 등	전체	15	11.8	29.4	5.9	-	-	5.9	5.9	35.3	5.9	100.0
		남	12	7.1	35.7	-	-	-	7.1	7.1	42.9	-	100.0
		여	3	33.3	-	33.3	-	-	-	-	-	33.3	100.0
물리적	10.권위를 빌미로 접근해서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행동	전체	7	14.3	14.3	-	-	-	-	14.3	28.6	28.6	100.0
		남	3	-	33.3	-	-	-	-	-	66.7	-	100.0
		여	4	25.0	-	-	-	-	-	25.0	-	50.0	100.0
	11. 모교지/MT나 등에서 바깥 등 은속한 곳, 외진 곳에서 강제로 키스나 몸을 만지는 행동	전체	9	-	33.3	-	11.1	-	-	11.1	33.3	11.1	100.0
		남	8	-	37.5	-	12.5	-	-	12.5	37.5	-	100.0
		여	1	-	-	-	-	-	-	-	-	100.0	100.0
	12. 데이트 할 때의 원치 않는 성관계(또는 미수에 그친 시도)	전체	20	4.8	38.1	-	-	4.8	-	-	47.6	4.8	100.0
		남	19	5.0	40.0	-	-	5.0	-	-	50.0	-	100.0
		여	1	-	-	-	-	-	-	-	-	100.0	100.0
물리적	13. 동아리방, 연구실, 강의실 등 학교의 밀폐된 곳에 혼자 있을 때 발생한 강간 또는 강간미수	전체	5	-	40.0	-	-	-	-	-	20.0	40.0	100.0
		남	4	-	50.0	-	-	-	-	-	25.0	25.0	100.0
		여	1	-	-	-	-	-	-	-	-	100.0	100.0

표 3-9. 응답자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의 지위

구분	피해 상대방 지위	성별	N	본교 남학생	본교 여학생	남자 교수	여자 교수	남자 교직원	여자 교직원	남자 외부인	여자 외부인	모름	계
언어적	1.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이나 호칭의 사용표현	전체	152	34.8	12.4	4.3	-	1.9	-	27.3	11.8	7.5	100.0
		남	74	30.8	19.2	1.3	-	3.8	-	25.6	11.5	7.7	100.0
		여	78	38.6	6.0	7.2	-	-	-	28.9	12.0	7.2	100.0
	2.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음담패설	전체	218	40.1	8.4	3.4	0.4	0.8	-	31.6	10.5	4.6	100.0
		남	83	34.8	13.0	2.2	1.1	1.1	-	29.3	14.1	4.3	100.0
		여	135	43.4	5.5	4.1	-	0.7	-	33.1	8.3	4.8	100.0
	3. 여성다운, 남성다운을 강요하는 말이나 행동	전체	383	28.8	12.3	9.7	2.2	1.8	0.6	25.0	14.5	5.0	100.0
		남	167	23.6	21.0	6.2	1.0	1.5	0.5	19.5	20.0	6.7	100.0
		여	216	32.2	6.6	12.0	3.0	2.0	0.7	28.6	11.0	4.0	100.0
비언어적	4. 여성의 신체를 위 아래로 흔들어보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하는 행동	전체	194	28.7	8.3	1.7	-	2.6	0.4	35.7	8.3	14.3	100.0
		남	42	12.0	28.0	-	-	2.0	2.0	10.0	30.0	16.0	100.0
		여	152	33.3	2.8	2.2	-	2.8	-	42.8	2.2	13.9	100.0
	5. 함께 이용하는 사무실이나 동아리방에서 누드 사진, 포르노그라피 등을 보거나 게시하는 것	전체	44	46.0	12.0	4.0	-	2.0	-	18.0	2.0	16.0	100.0
		남	12	50.0	7.1	-	-	-	-	21.4	7.1	14.3	100.0
		여	32	44.4	13.9	5.6	-	2.8	-	16.7	-	16.7	100.0
	6.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나친 관심과 집착을 보이거나 전화,이메일, 방문 등을 반복하는 것	전체	108	37.0	3.4	1.7	0.8	0.8	-	34.5	13.4	8.4	100.0
		남	22	8.7	13.0	-	-	-	-	4.3	65.2	8.7	100.0
		여	86	43.8	1.0	2.1	1.0	1.0	-	41.7	1.0	8.3	100.0
물리적	7. 술자리에서無理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	전체	96	51.9	1.0	6.7	-	1.0	-	32.7	3.8	2.9	100.0
		남	20	47.8	4.3	-	-	-	-	26.1	17.4	4.3	100.0
		여	76	53.1	-	8.6	-	1.2	-	34.6	-	2.5	100.0
	8. 불을 꼬집거나 쓰다듬기, 암덩이를 치거나 팔뚝을 찌는 등의 행위	전체	169	35.6	14.1	2.1	-	2.6	-	28.8	12.0	4.7	100.0
		남	52	23.0	32.8	-	-	1.6	-	21.3	18.0	3.3	100.0
		여	117	41.5	5.4	3.1	-	3.1	-	32.3	9.2	5.4	100.0
	9.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키스, 포옹, 성기접촉 여부 등	전체	68	27.8	5.6	2.8	1.4	1.4	-	47.2	6.9	6.9	100.0
		남	12	7.1	28.6	-	-	-	-	21.4	35.7	7.1	100.0
		여	56	32.8	-	3.4	1.7	1.7	-	53.4	-	6.9	100.0
물리적	10.권위를 빌미로 접근해서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행동	전체	17	23.5	5.9	5.9	-	23.5	-	29.4	-	11.8	100.0
		남	6	-	16.7	-	-	33.3	-	50.0	-	-	100.0
		여	11	36.4	-	9.1	-	18.2	-	18.2	-	18.2	100.0
	11. 모교지/MT나 등에서 바깥 등 은속한 곳, 외진 곳에서 강제로 키스나 몸을 만지는 행동	전체	19	27.3	4.5	4.5	-	-	-	36.4	13.6	13.6	100.0
		남	4	-	20.0	-	-	-	-	20.0	60.0	-	100.0
		여	15	35.3	-	5.9	-	-	-	41.2	-	17.6	100.0
	12. 데이트 할 때의 원치 않는 성관계(또는 미수에 그친 시도)	전체	36	37.8	2.7	2.7	-	-	-	43.2	8.1	5.4	100.0
		남	5	-	16.7	-	-	-	-	33.3	50.0	-	100.0
		여	31	45.2	-	3.2	-	-	-	45.2	-	6.5	100.0
물리적	13. 동아리방, 연구실, 강의실 등 학교의 밀폐된 곳에 혼자 있을 때 발생한 강간 또는 강간미수	전체	5	20.0	20.0	-	-	-	-	20.0	-	40.0	100.0
		남	2	-	50.0	-	-	-	-	50.0	-	-	100.0
		여	3	33.3	-	-	-	-	-	-	-	6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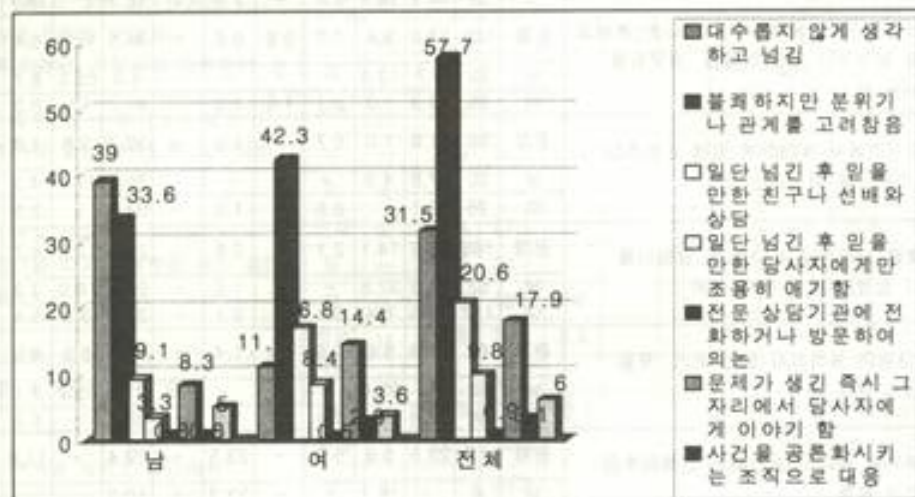
각 행동별로 응답자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의 지위를 분석해 보면, 4번, 9번, 10번, 11번, 12번은 남자 외부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본교 남학생이고, 이외의 행동의 경우 본교 남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

음이 남자 외부인이다. 피해경험의 상대방이 가해경험의 상대방과 다른 차이 중의 하나는, 주로 언어적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를 준 상대방이 남자교수라는 응답이 일정하게 나왔는데, 가해경험과는 달리 여성 응답자들의 응답율이 높아진다. 여학생들은 본교 남학생, 남자 외부인, 여자 외부인, 그리고 남자 교수 등으로부터 언어적 유형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성희롱·성폭력 대처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험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질문했는데, 447명의 응답자 중 57.7%가 불쾌하지만 분위기나 관계를 고려하여 참았다고 응답했고, 31.5%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 20.6%는 일단 넘어간 후 믿을만한 친구나 선배와 의논해 보았다고 응답했다. 17.9%는 문제가 생긴 즉시 그 자리에서 당사자의 잘못을 지적했으며, 3.1%만이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전문 상담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의논해 보았다는 응답자는 0.9%에 불과했다.

그림 3-15. 성별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대처방법(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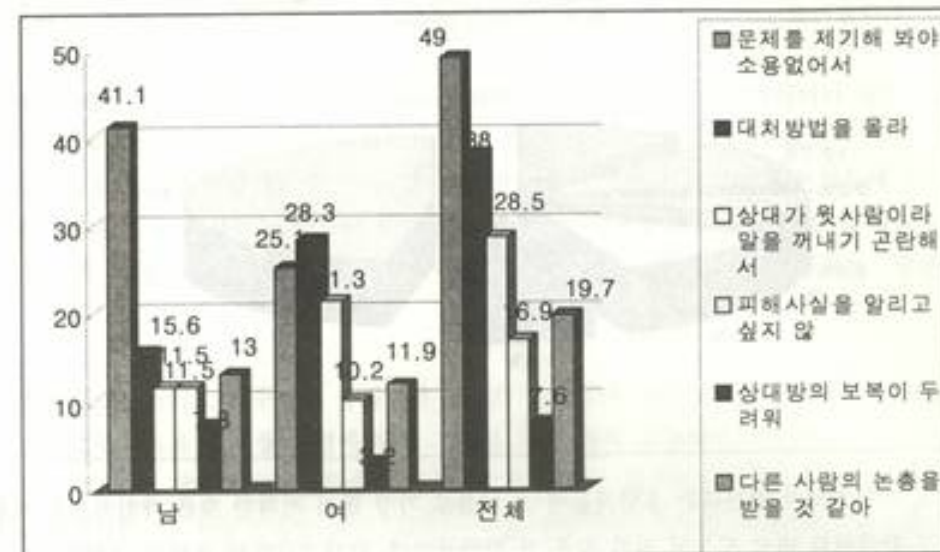


성별로 보면 응답자 중 남학생은 174명이고 여학생은 221명인데, 남학생들 중의 39%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 33.6%는 불쾌하지만 분위기를 고려하여 참았다고 응답했는데 비해 여학생들 중에는 11%만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고 응답했고, 42.3%가 불쾌하지만 분위기를 고려하여 참았다고 응답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355명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문제를 제기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라고 응답했고, 38%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28.5%는 상대가 뒷사람이라 말을 꺼내기 곤란해서, 19.7%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눈총을 받을 것 같아서, 16.9%는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문제를 제기할 경우 상

대방에게 보복 당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자도 7.6%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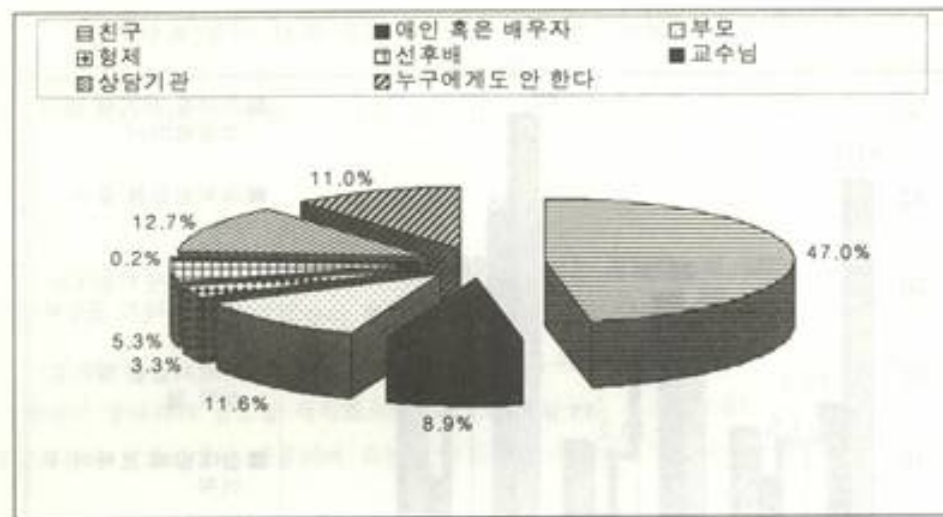
그림 3-16. 성별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대응 못한 이유(복수응답)



성별로 보면 응답자 중 남학생은 131명, 여학생은 222명이다. 남학생의 경우 문제를 제기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라는 응답이 41.1%,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가 15.6%, 다른 사람으로부터 눈총을 받을 것 같아서가 13%, 상대가 뒷사람이라 말을 꺼내기 곤란해서 11.5%,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가 11.5%, 문제제기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7.3%다. 여학생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인데 28.3%이고, 그 다음이 문제를 제기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가 25.1%, 상대가 뒷사람이어서 말을 꺼내기 곤란해서가 21.3%, 다른 사람의 눈총을 받을 것 같아서가 11.8%,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가 10.2%, 문제제기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 보복 당할 것 같아서 3.2%다. 문제제기 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응답과 보복 당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에게 더 많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응답과 상대가 뒷사람이라서 말을 꺼내기 곤란해서라는 응답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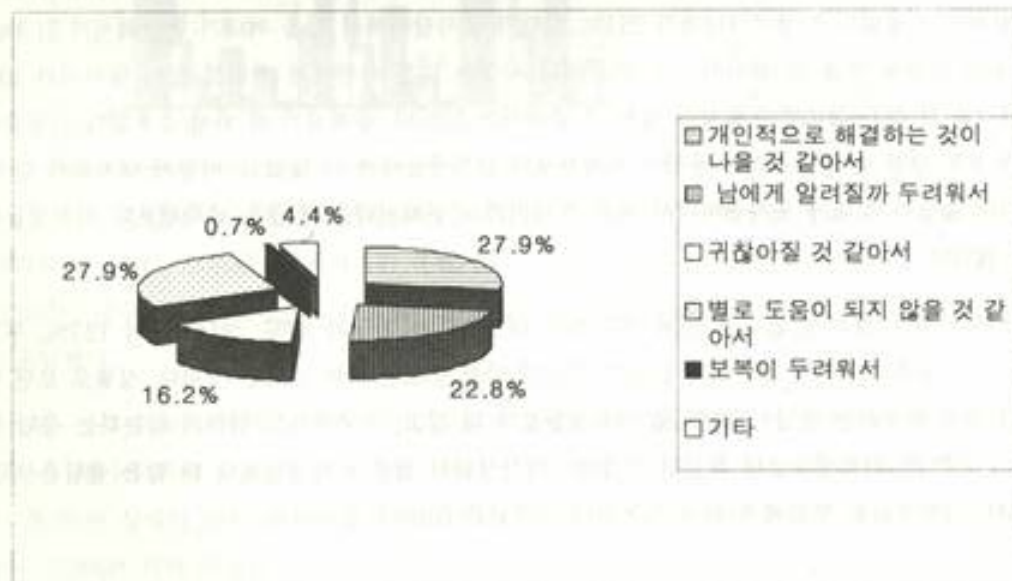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먼저 의논하는 대상으로는 친구가 47%, 상담기관이 12.7%, 부모가 11.6%,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가 11%다. 친구가 가장 중요한 의논 대상인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들의 경우 친구라는 응답이 50.6%로 여학생들보다 더 많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14.9%로 4.7%인 여학생들보다 확실히 더 많다.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더 많은 응답은 부모로 21.8%다. 남학생들은 부모에게 먼저 의논한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하다.

그림 3-17. 성별 성폭력 피해시 상담대상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이 그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인데, 각각 27.9%의 응답이 나왔다. 그 다음이 남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가 22.8%였고, 귀찮아질 것 같아서도 16.2%의 응답이 나왔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30.1%,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가 25.7%, 남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가 21.2%다. 여학생의 경우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가 더 많아서 40.9%, 남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가 31.8%,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3.6%로 남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응답율을 보였다.

그림 3-18. 성폭력 피해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4. 연구결과와 함의

이 연구를 통해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로, 대학 내의 성과 관련한 의식이나 태도는 개방적이다. 결혼에 대한 의식이나 동거, 동성애, 혼전 섹스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개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반 사회적 통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성적인 표현이나 논의들에 익숙해져 있는 젊은 세대의 감각과 함께 진보적인 태도나 의식을 선호하려는 대학문화의 특성이 한데 작용한 탓이라 할 수 있다.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이 더욱 개방적이라는 점은 이러한 대학문화의 영향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대학생 내부에서도 범주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난다. 우선 남녀의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 양자 모두에서 여학생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험도 더 많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섹스와 동거에 대해서는 더 개방적이지만, 결혼과 동성애에 대해서는 더 개방적이지 않다. 그런가 하면 여학생은 결혼에 대해서는 더 개방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남학생은 결혼에 대해서는 보다 더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종교, 가족 이외의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의 성별구성, 그리고 성장지역, 입학연도 등도 성별 차이 이외에 태도와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범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섹스, 동성애 등과 같은 문제들에는 종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의 성별구성은 섹스와 동성애는 물론 결혼, 동거, 이성교제 시의 갈등 해결방식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접촉집단의 성비가 비슷하다고 한 응답자들이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대학구성원을 구별하는 범주였던 인문계열-이공계열 사이의 계열별 차이는 위의 다른 변수들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로써 볼 때 대학구성원의 성의식이나 성에 대한 태도를 성별과 단과대나 계열을 중심으로 동질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이러한 차이가 특히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행동들을 둘러싸고 갈등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강압이 수반된 행위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언어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것으로 이해되어온 행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 특히 성별 차이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다. 여기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지만 학내의 여러 구성원들 사이의 세대차도 이 못지 않게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희롱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대학구성원들 사이에 합의되는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이로부터 적지 않은 갈등과 긴장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이 필요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성담론, 성문화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서 바람직한 성의식의 형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적지 않은 성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이상의 학생들이 섹스를 경험하였는데 대부분이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대답하였지만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많고,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는 응답의 비중도 적지는 않다. 또한 언어적 성희롱, 비언어적인 성희롱, 신체적인 성희롱 및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다수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성희롱과 성폭력은 많은 경우 학생들이 상호간에 일어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 내부에서 성문제와 관련한 폭넓은 교육과 성찰, 예방적 논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부인물에 의한 성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등장한다. 한편 극소수이지만 교수 또는 교직원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현상은 그 비중이 아무리 적어도 대학내 직무관계 또는 권위관계가 동반되는 성희롱 내지 성폭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 성폭력과 관련해,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라는 기존의 통념은 분석 결과 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교육을 포함한 학내의 성희롱 · 성폭력 정책과 집행에 있어서 남학생 피해에도 주의를 기울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 2

국내외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정책과 상담기구의 위상

1. 문제의 제기.....	47
2. '성적 괴롭힘'의 법제화와 외국의 대학 정책.....	49
1) '성적 괴롭힘'의 문제와 대학 정책의 형성 배경	
2)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정책의 국가별 특징	
3) 외국과 한국의 대학내 성희롱성폭력정책	
3. 국내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규정 분석	
1) 규정분석의 개요	
2) 규정 제정년도	
3) 규정 제목	
4) 용어 정의: 성폭력과 성희롱	
5) 규정의 적용 대상	
6) 기구와 조직체계	
7) 사건 처리 절차	
8) 피해자 신고인의 권리	
4. 맺 음 말.....	83

국내외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정책과 상담기구의 위상*

신상숙(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전문위원)

박정미(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1. 문제의 제기

여성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는 현대사회의 추세에도 아랑곳없이, 공적인 세계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무례한 언행과 성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폭력이 사회생활을 위협하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이 같은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은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집단적인 차별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어 왔으나, 이를 성차별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대책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¹⁾ 우리나라에서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으로 각각 '성희롱'과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이 성문화된 1999년에야 비로소 교육기관을 비롯한 각종 공공단체와 민간 사업장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률은 90년대를 아우르는 반성폭력운동의 한 획을 긋는 제도화의 성과이며, 무엇보다 대학 내 성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이란 새로운 범주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십년 전 서울대 교수의 성희롱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부터 신성한 상아탑의 은유에 가려져 있었던 대학 캠퍼스의 성폭력 문제들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교수 성폭력 사건만도 약 30건을 헤아리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 사건들이 각 대학에서 불거져 나왔다. 그간 신문과 대자보를 통해 알려진 사건들은 대학내의 성폭력이 동아리방, 연구실, 도서관, 기숙사, 술자리, 자취방 등 어디서나 발생하며, 혐오감과 굴욕감을

* 이 글은 김계현·김은경 교수와 신상숙·박정미·김보명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공동연구의 일부입니다.

1) 'sexual harassment'의 우리말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현행 법령에 공식화된 '성희롱'이지만, 이런 번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성희롱'이란 표현은 그 어감이 싫없이 놀려대는 것을 연상시키며, 여기에 담긴 권력적 함의나 피해의 심각성을 전달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harassment'는 불어의 'harer'에서 유래하며, 그 사전적인 의미는 '지긋지긋하게 하다,' '괴롭하게 만들다,' '귀찮게 굴다'란 뜻으로 풀이될 수 있고 위협, 조소, 박해, 모욕 등이 그 유사어에 속한다. 이해은, 「성적 괴롭힘에 대한 여대생의 대처 양태」, 서울대 석사 논문, 1998, 10-11쪽.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내의 현행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된 '성희롱'을 그대로 쓰는 한편, sexual harassment의 본래 뜻을 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성적 괴롭힘'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느끼게 하는 성적 발언에서부터 강제추행이나 강간처럼 형법상의 범죄에 이르기까지 실로 그 행위의 양상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의 비율이 1/3을 넘어선 오늘, 여대생 3명 중 1명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한 실태 조사는 위험 수위의 경계에 놓인 캠퍼스 성문화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²⁾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된 1999년 이후 국내의 많은 대학들은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예방과 처리에 필요한 대학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94.6%가 성폭력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학칙의 개정으로 반영하였으며, 이 가운데 2/3 이상이 대학 안에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년 6월 기준). 그러나 과연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구의 편제가 대학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타당성과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 차원의 정책 수립이 단시일 내에 급속히 이뤄졌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학생들이 추진한 반성폭력 학칙의 요구와 현행 법령 및 정부기관의 행정지침의 요구가 정책 수립의 배경에 함께 작용함으로써 양자의 '긴장'이 대학 정책에 가져온 효과 역시 논구되어야 할 지점이다. 가령 국내 대학의 규정들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는 '성폭력'과 '성희롱' 개념의 의미가 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양자의 의미관계가 적절히 정립되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학내 성폭력 문제의 특성이라든가 상담과 조사·처리의 원칙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와 실무적인 지식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교환 네트워크의 기반 역시 취약한 것 역시 각 대학의 정책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괴롭힘은 단체나 집단의 성격에 따라 발생 맥락, 발현 양상, 예방 및 해결의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각론적인 접근이 필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단체인 동시에 고용관계를 수반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 기관이다. 또한 대학 캠퍼스는 일반 기업체와 달리 교육, 연구, 행정, 커뮤니티 생활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공간이며,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관계의 유형 역시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비교적 많이 소개된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들이나 그 해결 방식에 비중을 둔 기존의 연구나 정책 지침서들만으로는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지평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 대학내 사건의 문제 해결 과정을 주도하는 정책과 그 일선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기구의 위상에 대한 연구 관심은 바로 이 같은 기초 작업의 절실한 필요성으로부터 비롯한다.

2)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생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의 24.5%에서 2002년에는 36.9%로 증가하여 성별의 불균형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에 여성부가 전국의 20개 대학의 남녀 교직원, 학생 등 총 2,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내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은 36.7%이며, 대학원생(39.4%), 학부생(39.1%), 교수(30.8%), 일반직원(30.3%)로 집단특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여성부, 2002). 일찍이 미국여성대학인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는 여대생의 약 75%가 성희롱의 영향권에 놓여 있으며 피해자의 수가 어림잡아 5백 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한국보다 먼저 또는 유사한 시기에 성적 괴롭힘에 대처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와 경험을 알아보고, 국내외의 각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정책의 내용과 수행 방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오늘날 한국의 대학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들을 진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³⁾ 연구의 대상인 국내외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정책은 대학 구성원들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의 상담 및 조사 처리를 목표로 삼는 일련의 행위와 과정으로서, 여기에는 각 대학의 입장과 노선에 따라 배치된 규칙, 절차, 기구, 방침 등이 포함된다. 사건을 상담하고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려면 규칙과 절차 뿐만 아니라 고충처리의 일선에 놓인 기구들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하는 기구들의 조직적 위상은 이 연구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해당 국가들의 성희롱·성폭력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과 대학 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특징을 비교하고, 국내의 4년제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을 수집하여 총 160개 대학의 규정들에 대한 내용분석과 통계처리를 병행하였다. 아울러 규정만으로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학 상담기구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추가함으로써 규정 분석이 갖는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국내외 각 대학들의 규정, 각국의 법제 및 판례, 실태조사, 상담통계 등의 다양한 1차 자료와 국내외의 2차 문헌들이며 문헌연구, 사례분석, 조사통계기법 등이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었다.

2. '성적 괴롭힘'의 법제화와 외국의 대학 정책

1) '성적 괴롭힘'의 문제와 대학 정책의 형성 배경

'성적 괴롭힘'은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피해를 발견하여 명명하고 그것을 법의 반열에 올려놓은 최초의 사례이며, 이 각성된 문제의식의 국제적 확산은 각국의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온갖 종류의 성적 접근과 언설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일상생활과 뒤얽혀 많은 여성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어도, 과거에는 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문제 삼을 기준이 없었다. 그런데 1974년에 미국 코넬대학의 린 파일리(Lyn Farley)는 '여성과 노동'이란 주제의 현장연구 확대강좌를 개설하여 일하는 여성들이 자기 경험을 터놓고 말하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우리를 각자가 적어도 한번 쯤 남성들의 행동이 너무 불편해서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기존의 어떤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없는 이 문제가 여성들이 전형적으로 경험하는 고용상의 특징이란 것을 깨달은 파일리는 문

3) 이 연구에서 굳이 '성희롱·성폭력 정책'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까닭은 국내 대학의 관련 규정들이 때로 '성희롱'과 '성폭력' 개념을 혼용 이 범주들의 개념화 방식의 차이 또한 분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성폭력'은 다양한 개념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하여 채택한 표현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제의 행동을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이라고 명명하였다.⁴⁾

1980년대에 들어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등 해외의 여러 나라들이 '성적 괴롭힘'과 관련된 법이나 규정을 만들었으며, 일본과 한국은 1990년대 말에 이르러 국가 차원의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정비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법 제도는 한결같이 '성적 괴롭힘'의 개념과 문제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성적 괴롭힘과 연관된 정책이 수립되는 역사적인 조건과 문화적 배경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정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성희롱·성폭력 정책이 수립되고 고충처리 기구가 설치되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대학내 정책과 연동되는 국가 차원의 법 제도 및 거시적인 정책의 존재 여부와 그것의 성격이다. 대학내의 성희롱·성폭력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법령이나 정책이 무엇이나에 따라 성립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가령 '성적 괴롭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령이 없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성적 괴롭힘의 피해 구제 범위가 '직장내의 고용관계'에 한정되는 곳에서는 '학생의 피해'를 구제해야 할 '교육 기관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거나 상담 및 조사 기구를 운영할 여지가 별로 없다. <대학내 정책의 성립 가능성은 노동관계법 뿐만 아니라 '인권법', '성차별 금지법' 등을 통해 공공성을 지닌 모든 단체들을 망라하고 구성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의 기반 위에서 가장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들의 가시화에 병행하는 학생들의 동원 양상 역시 대학내 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예컨대 1960년대 말-70년대 초 여성해방운동의 진원지인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북미 지역에서는 대학내의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으며, 일본과 한국 역시 마찬가지 양상을 보여준다. 반면에 아직 교육기관에 특화된 성희롱 관련 정책이 부재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최근 사건을 계기로 대학내 성희롱 문제에 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집단적인 목소리가 뒤늦게 터져 나오고 있다.⁵⁾

셋째, 대학내 정책은 '성적 괴롭힘'을 이해하는 문제틀을 제공하고 대학내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외부의 전문가 집단과 지지 네트워크의 특성과 결합 양상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에서 성적 괴롭힘의 문제는 여성노동의 문제로부터 제기되었는데, 이 논의를 주도한 전문가 집단은 반강간운동이나 강간법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와 서로 특별한 관련이 없다. 반면에 한국에서 성적 괴롭힘을 사회적으로 정점화한 것은 90년대에 반성폭력운동을 주도한 여성단체와 상담소였으며, 이들의 경험과 의견은 대학 수준의 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살펴볼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은 모두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정책이 보편화되어 있고 상담기구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나라들이지만, 이 세 가지 요인의 조합이 다소 상이하게 작용하여 저마다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정책의 국가별 특징

: 미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

(1) 미 국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Equal Employment Commission)가 1980년에 내놓은 지침이 '성적 괴롭힘'의 고전적인 정의로 여겨져 국제적인 명성을 구가하고 있으나, 미국에는 성적 괴롭힘에 대한 성문화된 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적 괴롭힘'은 법원의 판례로 정립되어 왔으며, 그것이 연방법이 금지하는 성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례들이 축적됨으로써 실효성을 갖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대학내 성희롱 금지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연방 법률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성, 인종,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편(Title VII of Civil Rights Act)이며, 다른 하나는 민권법의 핵심인 차별 금지를 교육법에 반영한 1972년의 '수정 교육법', 제9편(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이다. '수정 교육법', 제9편은 "미연방 내에서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아래 있는 개인은 어느 누구도 성을 근거로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을 부정당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교육상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권법', 제7편의 시행을 관장하는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라든가 '수정 교육법', 제9편의 시행 기관인 교육성 민권국(OCR: Office of Civil Rights)에서 내놓는 세부 지침들 역시 미국 대학의 내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대학은 고용관계와 교육서비스 기능이 중첩되어 있는 기관이므로, 대학의 구성원들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권법', 제7편과 '수정 교육법', 제9편의 두 가지 구제 수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학생은 오직 후자에 의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 법제의 특성상 성희롱 금지는 위 법률들이 금지하는 성에 기반한 차별이 성희롱을 포괄한다는 연방대법원의 중요한 판례들이 축적되고 나서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었다.⁶⁾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학교와 대학의 성차별 문제에 항거하는 교육자와 학생들의 저항이 일어났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교육기관은 '민권법', 제7편의 보호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며, 학생들에 대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전혀 없었다. 이 투쟁의 효과는 1972년의 '수정 교육법', 제9편으로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있어서의 성차별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1977년에 예일대학에서

4) Lyn Farley, *Sexual Shakedown: The Sexual Harassment of Women on the Job*, New York: Warner Books, 1978, pp. 11-12.

5) Abigail C. Saguy, *What is Sexual Harassment?: From Capitol Hill to the Sorbonn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p. 151-164.

6)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86년에 민권법 제7편의 수입기관인 EEOC의 가이드 라인을 재확인하는 판결(Meritor Savings v. Vincent)에 이어, 1992년에는 수정 교육법 제9편에 의거하여 교수-학생 간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Franklin v.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을 내렸고, 1999년에야 비로소 학생-학생 사이의 동료간 성희롱(peer harassment)에 대한 교육기관이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Davis v. Monroe County Board Education)가 나왔다.

7) Robert J. Shoop, "The Legal Context of Sexual Harassment on Campus" in *Sexual Harassment on Campus*, ed. by Bernice R. Sandler et. als., Boston: Allyn and Bacon, 1997, pp. 33-34.

는 교수의 성적인 요구를 거부하여 학업 성적의 불이익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1980년에 미국 순회법원은 이들의 고소를 기각하였으나 「수정교육법」 제9편이 적어도 학업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건형(quid pro quo) 성희롱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 1980년은 성적 괴롭힘과 관련된 대학 정책사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으며, EEOC의 성희롱 지침과 예일대 사건의 법원 판결은 미국의 대학들이 성적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고충처리 절차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디애나대학의 여학생처가 198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311개 대학 중 83%가 '81-82년 이후'에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을 수립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1개월 정도이며, 주로 대학 본부가 정책의 채택과 시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66%의 대학이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정책을 성문화하였고, 46%는 성적 괴롭힘과 관련된 고충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규정, 절차, 고충처리 등에서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여, 사립 학교에 비하여 공립 학교의 대응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참조).

< 표 2-1 > 미국 공·사립대학의 정책 실시의 차이(1984년 조사)

	공 립	사 립
성문화된 공식 정책	79.9 %	51.8 %
고충처리절차의 실시	54.2 %	38.0 %

출처: Claire Robertson et. al., 앞의 글, pp. 794-5에서 재구성.

정책 시행의 초기 단계에서 미국의 대학들은 주로 성적 괴롭힘을 예방하는 지침서와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워크숍을 통해 정책을 계몽하는 데 치중하였다. 당시의 고충처리 실적은 보면, 구두 상담과 서면 신고가 각각 5.3건, 3.2건으로 상담·신고 건수가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상담은 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보직교수가 맡았으며 고충상담원, 위원회, 여학생실 등의 관여는 거의 없었다.

그러면 과연 20년이 지난 오늘 미국의 대학들의 성적 괴롭힘 방지 정책은 어떻게 변모하였을까? 미국의 1,257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한 홉슨 등의 연구를 보면, 미국의 대학 정책은 과거에 비하여 세부적인 내용이 훨씬 더 확충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10) 우선 설문에 응답한 536개 대학 중 약 96.6%가 우리나라 대학의 규정에 해당하는 성문화된 공식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학교들은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절차와 해결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선택지를 한다거나 사건이 무엇이건 신

속히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학생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교원이나 학생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대학은 약 20% 미만이고, 절반 가량의 대학들은 교원이나 학생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0) 홉슨 등의 연구에서도 공·사립 대학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는데, 사립 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하여 교원 교육이나 조사위원의 전문적 훈련 등에 대하여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표 2-2 > 미국 대학의 성적 괴롭힘 방지 전략(2002년 조사, 중복응답)

정책의 세부 사항	전 체 (%)		공 립 (%)		사 립 (%)	
문서화된 공식 정책(규정)의 존재	518	(96.6)	175	(97.2)	343	(96.3)
교원에 대한 의무적인 예방교육	100	(18.7)	34	(18.9)	66	(18.5)
교원에 대한 자발적인 예방교육	265	(49.4)	137	(76.1)	128	(36.0)
학생에 대한 의무적인 예방교육	95	(17.7)	20	(11.1)	75	(21.1)
학생에 대한 자발적인 예방교육	306	(57.1)	128	(71.1)	178	(50.0)
모든 고충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482	(89.9)	161	(89.4)	321	(90.2)
학생 도우미들의 피해자 지원 가능	239	(44.6)	67	(37.2)	172	(48.3)
고충처리 방식의 충분한 선택지 제공	405	(75.6)	76	(42.2)	119	(33.4)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이용 가능	493	(92.0)	168	(93.3)	325	(91.3)
조사청문위원회에 대한 전문적 훈련	195	(36.4)	76	(42.2)	119	(33.4)
조사청문 기구의 학생 참여	229	(42.7)	73	(40.6)	156	(43.8)
교원의 성희롱 관련 징계 기록 제공	8	(1.5)	3	(1.7)	5	(1.4)
성희롱 관련 통계의 고시	100	(18.7)	36	(20.0)	64	(18.0)

출처: Hobson et. al., 앞의 글, pp. 21, 24에서 재구성. 총 536(공립:180, 사립: 356)개 대학.

<미국의 대학 정책은 상대적으로 예방교육보다 피해에 관한 상담 및 고충처리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담 건수는 대학의 규모, 사건 발생 빈도, 피해자의 인식, 상담소의 인지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확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산타크루즈의 캘리포니아대학(UCSC)은 5년 평균 사건 관련 고충 상담 건수가 95.7건에 달한다(< 표 2-3 > 참조).

대학 안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는 대개 '비공식적 절차'(informal process)와 '공식적

8) Claire Robertson, Constance E. Dyer & D'Ann Campbell, "Campus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Policies and Procedures at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igns*, 1988, vol. 13 no. 4, pp. 792-812.

9) Charles J. Hobson, & Jennifer Guziewicz, "Sexual Harassment: Preventive/Protective Practices at U.S. College and Universities", *College Student Affairs Journal*, vol. 21, No. 2, 2002 pp. 17-29.

10) Hobson 등은 학생과 교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율을 각각 74.8%와 67.2%로 보았으나 이 비율은 의무 교육과 자발적 교육의 중복 응답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된 비율로 여겨진다. 이들이 제시한 표에서 수치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계산해 보면, 의무적인 교육을 채택하는 학교들은 자발적인 교육도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발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교수들의 참여 비율이 평균 16%, 학생들의 참여율은 평균 15.1%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현행법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곳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의미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인 절차(formal process)로 나누어진다. 상담 과정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이 우선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로 들어가 조사청문을 거치는 사건은 그다지 많지 않다. 비공식적인 절차는 주로 성희롱전문상담조사관(Title IX Officer)이 담당하게 되는데, 산타크루즈대학은 최근에 들어와 자문위원회를 보강하여 비공식적 절차와 공식적인 절차의 간극을 보완하였다.

이처럼 고충처리 절차의 운영에 비중이 실리는 까닭은 우리처럼 현행 법령이 예방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EEOC나 교육성 OCR 등 연방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¹¹⁾ EEOC와 OCR은 피해자의 신고를 직접 접수하여 자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관들의 판단은 교육기관의 연방 재정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EEOC는 사건에 대한 중재와 조정을 시도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금전적 배상(전보적 배상 및 처벌적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는 EEOC가 직접 나서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¹²⁾

< 표 2-3 > UCSC의 연도별 사건 상담 접수 건수

	1995-96	1996-97	1997-98	1998-99	1999-2000	2000-2001	2000-02
사건상담건수	127	121	113	77	93	67	72

자료 : UCSC TitleIX Office, *Sexual Harassment Annual Report*, 각년도에서 작성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학 정책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많은 학교들이 '성적 괴롭힘'의 고충처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강간을 비롯한 범죄 수준의 성폭력(sexual assault)의 방지와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캠퍼스에서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강압적인 분위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하지 않은 폭력적 성관계가 일어나기 쉽다. 그러나 '데이트 강간'을 비롯하여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속출해도 과거에는 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갖춘 학교가 극소수에 불과했다. 1995년의 조사에 따르면, 84%의 대학이 범죄 수준의 심각한 성폭력 피해에 대처하는 정책을 갖추고 있고 이 중 74%가 90년 이후에야 비로소 이런 정책을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¹³⁾

11) 미국 연방 교육성은 차관 직속으로 8개의 사업 부서를 두고 있으며, 민권국(Office of Civil Rights: OCR)은 그 중의 하나이다. 본래 민권국의 주요 업무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각 주의 프로그램들이 민권법을 비롯한 연방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현재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연구비는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연구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권국은 교육성 외에도 각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12) '민권법' 제7편과 '수정교육법' 제9편에 의거한 해결방식의 차이, 그리고 EEOC와 OCR의 활동에 관해서는 BarBara Watts, "Legal Issues", in *Sexual Harassment on Campus*, ed. by Bernice R. Sandler et. als., Boston: Allyn and Bacon, 1997과 Robert J. Shoop, 앞의 글을 참조.

이런 전반적인 상황 변화를 유도한 촉매는 역시 학생들의 문제제기였다. 1990년에 미국의 브라운대학과 안티호크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강간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대처, 허술한 캠퍼스 안전 체계,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패 등에 반발하는 여학생들의 '화장실 낙서 사건'이나 검은 상복 시위 및 학칙 개정 운동 등이 일어났다. 화장실 낙서 사건 이후 브라운대학은 성폭력에 관한 '학우교육'(Sexual Assault Peer Education)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모든 신입생이 예방교육 오리엔테이션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였다. 안티호크대학 역시 학생들의 규정 개정 요구와 시안 작업의 내용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모든 성적 접근의 시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였다.¹⁴⁾

대학 정책의 변화는 국가 차원의 정책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90년대 초에 미연방 정부가 제정한 '학생들의 알 권리 및 캠퍼스 안전법'(1990)과 '여성폭력방지법'(1994)은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학생들의 알 권리 및 캠퍼스 안전법'(Student Right-To-Know and Campus Security Act)은 각종 연방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연간 안전 보고서(Annual Security Report)를 제작하여 배포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 연간 안전 보고서에는 해당 기관의 캠퍼스 안전 정책과 캠퍼스 범죄 통계가 들어가야 하며, 해당 대학은 모든 재학생, 직원, 입학 및 취업 지원자에게 이를 배포해야 한다. 이 캠퍼스안전법은 1992년에 이르러 "캠퍼스 성폭력 피해자 권리장전"(Campus Sexual Assault Victims' Bill of Rights)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는데, 이는 각 대학들이 연간안전보고서의 일부로서 해당 대학의 성폭력 예방 정책을 개발하여 공시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기본권을 알려주어야 함을 뜻한다. 1998년에 또 다시 수정된 이 법은 보고와 통계 작성의 의무를 강화하고, 캠퍼스 안전과 연관된 광범위한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성폭력특별법에 준하는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은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각종 예방 및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법률에 의거하여 2000년까지 총 2억 5백만 달러의 연방 정부 지원금이 각 주 정부에 할당되었다.¹⁵⁾ 또한 이 법은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캠퍼스 성폭력'(Campus Sexual Assault)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법적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전국적 기초 연구 규정을 두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1999년에 미 법무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21개 대학에 81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00년에는 추가로 20개 학교에 68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¹⁶⁾

13) Jodi Gold, Jessie Minier, & Susan Villari, "Creating Campuses Intolerant of Rape: Peer Education and the Institutional Response to Rape," ed., *Just Sex*, Lanham: Roman & Littlefield, 2000, p. 276. 1995년에 1,100개 대학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 조사에 응답한 학교는 모두 605개교로 성폭력 관련 정책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모두 496개 학교이다.

14)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Jodi Gold & Susan Villari ed., 앞의 책, 그리고 Allen J. Ottens & Kathy Hotelling ed., *Sexual Violence on Campu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1의 서문을 참조.

15) '여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에 대한 폭력 전반을 다루고 있는 법률로서,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것 외에도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예방을 위한 교육과 조사연구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점차 성적 괴롭힘에 관한 고충처리를 전담하는 상담기구와 별도로 강간위기센터를 운영하거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들이 반성폭력운동의 과정에서 실제로 수행해 온 생존자 지원 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양한 학우도우미(Peer Supporters) 프로그램을 제도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표 2-3 > 참조).

< 표 2-4 > 미국 대학들의 성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 실태(1995년 조사, 중복응답)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율 (%)	학생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율 (%)
상담 및 지원 서비스	93	예방 캠페인 활동	51
성폭력에 관한 교육 워크샵	81	학생이 주도하는 성폭력예방교육워크샵	46
안전을 위한 동행 서비스	73	안전을 위한 동행 서비스	45
성폭력에 대한 관한 오리엔테이션	68	학우 상담(Peer Counseling)	39
성폭력에 관한 특별한 지침서	62	자기방어훈련 코스 또는 프로그램	30
24시간 위기 개입	55	안전한밤거리(Take Back the Night)행진	30
직원들을 위한 훈련	47	생존자를 위한 지지 모임	17
법적인/재판상의지지	38	강간 생존자를 위한 동행/지지	16
강간 피해자를 위한 동행/지지	30	성폭력 피해자 터놓고 말하기(Speak-out)	15
교원을 위한 훈련	20	학우 긴급전화	9
캠퍼스 내에 강간위기센터 설치	10	남성문제 소모임	13

출처: Jodi Gold, Jessie Minier, & Susan Villari 앞의 글, p. 278에서 재구성.

(2) 캐 나 다

지방자치가 발달하고 인권 정책에서 앞서나가는 캐나다는 성적 괴롭힘의 법제화가 비교적 일찍 추진된 곳 중의 하나이다. 1977년에 의회를 통과한 캐나다의 「인권법」(Human Rights Act)은 1980년대 초반의 개정을 통하여 동법 제 14조에 '성적 괴롭힘'을 명시하고 고용은 물론 공공 서비스나 거주 설비를 제공하는 모든 영역에서 성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법」에 의거하여 '성' 뿐만 아니라 성적 선호, 국적, 인종, 민족성 등에 의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캐나다는 심지어 스토킹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괴롭힘 범죄'(Criminal Harassment)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있다(제 264조). 말하자면, 캐나다의 법제도는 '괴롭힘'을 차별에 기인하는 인권침해의 포괄적인 범주로 상정하고, '성'과 연관된 괴롭힘을 그 하위 영역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특징이다.¹⁶⁾

16)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2000, 178-194쪽.

17) 캐나다에서 성적 괴롭힘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기관은 인권법의 시행을 관장하는 연방 및 각 자치주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이다. 인권위원회는 성적 괴롭힘을 비롯한 차별적 행위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데, 조정이 실패하면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에서 사건을 다루게 된다. 인권재판소는 청문회를 거쳐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구제명령의 내용에는 성희롱 행위의 중지,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 방지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고용기피평등위원회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성적 괴롭힘에 관한 입법화를 비교적 일찍 추진한 것과 대조적으로, 캐나다의 대학들에서 성적 괴롭힘에 관한 정책이 채택되는 과정은 불균등하고 때로 적지 않은 전통이 수반되었다. 각 대학에 보다 철저한 성적 괴롭힘의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주 정부의 가이드라인 시안이 대학 측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 온타리오 주의 경우가 단적인 예일 것이다. 온타리오 주는 「인권법」(Ontario Human Rights Code)에 의해 이미 1981년부터 고용관계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금지해 왔고 그 범위를 공공시설의 이용에까지 확대하였다. 그런데 1993년에 온타리오주의 교육훈련부가 성적 괴롭힘의 '불관용'(zero tolerance) 원칙과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는 정책의 수립을 강조하는 「온타리오 주 대학에 있어서의 괴롭 및 차별 방지 요강」을 배포하자 상당수의 대학들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통제와 검열의 기도라고 비판하며 의견 제출을 거부하였다.¹⁸⁾

캐나다의 대학들은 연방 및 주 인권법이 정한 기관으로서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면서 정책의 범위를 주로 고충처리 절차의 운영에 한정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오타와대학과 토론토 대학의 사례를 보면 일반 상담이 아닌 공식적인 고충처리 절차는 3단계로 이뤄지는데, 1단계에서는 성희롱전문상담조사관이 사건 당사자 양측을 만나서 신고 내용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비공식적 해결(informal process)이다. 1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중재자를 선정하여 2단계의 중재(mediation)를 시도하게 되며 중재가 실패할 경우 3단계의 공식적인 조사청문(formal hearing)의 과정으로 넘어간다. 조사청문의 패널은 교원, 학생, 직원으로 구성되며, 조사청문의 단계는 원칙적으로 앞의 두 단계와 구별된다.

토론토대학은 다른 대학들보다도 상담과 고충처리의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이것은 대학의 규모가 큰 것과도 관련이 있다(학생: 55,154, 교직원:13,429). 2001-2년의 사건 처리 내용을 보면 공식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50건의 사건 중 대부분은 1단계와 2단계의 합의와 중재로 해결하며, 공식적인 조사청문회에 올라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음을 알 수 있다.

< 표 2-5 > 토론토 대학의 연도별 고충 상담 및 공식적 처리

연 도	전체 고충상담	공식적 접수처리
1996-1997	217	36
1997-1998	236	48
1998-1999	216	51
1999-2000	246	40
2000-2001	272	55
2001-2002	227	50
총 계	1,324	280

< 표 2-6 > 공식적 접수 처리의 내용

(2001-2002년도)	
1단계 이전에 철회	1
1단계(비공식적) 해결	38
2단계 이전에 철회	1
2단계(중재) 해결	6
3단계 이전에 철회	-
3단계(공식적 청문회)의 처분	-
다른 절차로 인한 유예	1
기각	-
진행중	3
총 계	50

자료: University of Toronto Sexual Harassment Education, Counseling and Complaint Office, Annual Report 1 July 2001 To 30 June 2002에서 작성

(EEOC)와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차이에 관해서는 이주희, 「성차별 분쟁조정기구 및 분쟁처리 절차 비교연구」,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자료 99-4, 1999를 참조.

18) <http://www.mugu.com/cgi-bin/Upstream/Issues/education/ontario.html>

이처럼 조정이나 중재로 거의 모든 사건이 처리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정책의 성문화된 규정에 제시된 절차가 실제로 전혀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대학내 사건 처리 자체가 성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실무자 한 두 사람의 판단과 중재에 의존하는 구조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동일인이 상담과 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그 나름의 장점도 있으나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¹⁹⁾

캐나다의 사건 처리 모델은 미국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는데, 이 두 나라의 대학들은 성희롱 문제를 전담하는 상담조사관을 두고 있으나, 조사청문회의 패널이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하고 조정과 중재를 실행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의 방식으로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해결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상담원이 공정한 조사관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지하거나 치유하는 상담을 조사와 함께 진행하기가 어렵다. 비공식적인 해결 절차를 일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는 권장할 만하다. 하지만 비공식적 해결은 결국 개인적인 합의에 의존하는 해결이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상담과 조사에 복수인의 참여를 권장하는 일본의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 일 본

'sexual harassment'란 용어가 일본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89년이지만²⁰⁾ 10년 후 이 낱말은 '세쿠슈아루·하라스멘토'(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 약칭: セクハラ)란 외래어로 정착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에 호텔 여직원에 대한 성적 행위의 강요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으나, 대학 캠퍼스의 '세쿠슈아루·하라스멘토'(이하 세쿠하라) 문제는 여전히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1993년에 자신의 비서에게 혐의를 받고 있던 교토(京都)대학 교수가 스스로 사임하고 피해자가 교토변호사회에 인권구제를 신청을 한 것이 매스컴에 보도되자 상황은 반전되었다. 각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이 공개되고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지지하는 같은 대학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소송까지 가세하면서, '캠퍼스 세쿠하라'가 어느덧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 것이다.

교토대학 사건의 여파 속에서 1994년 6월에 일본 여성학회는 문부대신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고, 1996년에는 나고야(名古屋)대학과 후쿠오카(福岡)대학에서 대학원생과

19) 실제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한 대학에서는 사건의 형식적인 처리로 말미암아 학장이 사임하고 대학의 위신이 크게 실추되는 일이 있었다. 사이먼프레이저 대학은 수영팀의 일원이었던 3학년 재학생이 성적 괴롭힘을 하던 끝에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수영팀의 수석코치를 대학 측에 신고하였으나, 철저한 조사청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코치에 대한 해임 결정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이 대학에서는 1990년부터 96년까지 600 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97%가 공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December 19, 1997.

20) 水谷英夫, *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の 實態の 法理*, 東京: 信山社, 2001, pp 109-112.

교수들이 지역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캠퍼스 성적 괴롭힘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런 산발적인 노력으로 넓혀진 공감대 위에서 1997년 9월에 결성한 단체가 바로 '캠퍼스세쿠하라전국네트워크'이다. 교수, 여성학자, 변호사, 대학 상담원, 학생 등 개인과 기관이 참여하여 현재 약 400명에 이르는 전국네트워크는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성적 괴롭힘의 문제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캠퍼스 세쿠하라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여 규정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였으며, 전국 또는 지부별 대회나 연수회를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 단위 연락망을 구축하여 피해 상담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또한 전국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정부 기관과 대학에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정책적 제안 역시 이들의 활동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²¹⁾

한편, 사회 여론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1999년에 세쿠하라에 대한 법제화를 단행하였다. 우선 1999년에 개정된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은 직장에서의 성희롱 행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인하여 해당 여성 노동자가 노동조건에서의 불이익을 받거나 작업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고용관리상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였다(제 21조). 하지만 대학 정책의 수립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1999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 인사원의 세쿠하라 방지 등에 관한 「인사원규칙10-10」과 「문부성의 세쿠하라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의 규정은 직원의 금지, 감독자의 성희롱 방지 및 대처 의무를 명시하는 것 외에, 국립학교 등에 상담원을 두어 고충상담에 대응하도록 하고 각 학교의 기관장에게 교직원에게 대한 계몽과 연수를 실시할 책무를 부과하였다. 이 규정은 또한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 신청, 조사에 대한 협력, 기타 정당한 대응을 한 직원이나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표 2-7 > 일본 국립대학의 정책과 상담 체계 및 관리

	구 분	실시한 대학	실시비율 (%)
정책	관련 규정의 제정	99	(98.0)
	관련 위원회의 설치	91	(90.1)
상담 체계	상담창구를 상시로 개설	30	(29.7)
	각 부서마다 상담원을 배치	55	(54.5)
	여러 명의 상담원이 (사건에) 대응	83	(82.2)
	동성의 상담원을 동석하게 함	80	(79.2)
상담 관리	상담원용 자료를 배부	75	(74.3)
	상담원에 대한 연수	64	(63.4)

자료: 文部科學省, 「平成13年度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防止等に関する取組状況調査 結果概要」, 2001에서 작성.

'캠퍼스 세쿠하라'에 관한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네트워크 운동과 이 목소리에 힘을

21) キャンパス・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全国ネットワーク 編, 「キャンパス・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 ガイドライン手引き」, 1999. 캠퍼스세쿠하라전국네트워크의 활동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ica.apc.org/shoc/>)를 참조.

실어주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실시되자, 일본에서는 국립대학들이 정책을 성문화한 규정을 제정하고 사립대학들 역시 이 추세에 동참하기 시작한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립대학들의 세쿠하라 규정 제정의 비율은 2001년 현재 98%이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한 곳이 91%에 달하여 정책의 틀이 조속히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2-7 > 참조).

그러나 일본의 국립대학들 가운데 상담창구를 상설적으로 운영한다고 응답한 학교는 101개 대학 중 30개교(29.7%)에 불과하다. 상담창구의 설치 형태를 보면 가장 많은 경우는 보건관리센터나 학생상담소 등의 다른 기구 아래 부속하여 병설하는 경우(41개 대학)이며, 15개 대학만이 세쿠하라 전문 상담창구를 따로 두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8 > 참조).

< 표 2-8 > 일본 국립대학의 상담창구 설치 형태(중복응답)

세쿠하라 전문 창구를 상설하고 있음	15
보건관리센터나 학생상담소 등 기타 기관에 병설	41
부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짜에 개설하고 있음	3
창구는 없고 상담원이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	76
변호사, 상담협회 등의 외부 기관과 제휴하여 상담하게 함	2
상담원이 없다	0

자료: 위의 표와 동일.

캠퍼스 세쿠하라 문제에 특화된 전문 상담기구를 따로 설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많은 대학들이 일반 교직원들을 상담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본의 대학들은 흔히 각 학과나 부서의 교수와 직원을 '상담원'으로 배정하여 고충 상담을 맡도록 하거나, 사건의 발생시에 여러 명이 함께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학들 모두가 상담원 배정을 완료하고 대학별 평균 상담원의 수가 무려 26.4명이나 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상담원들의 성비는 55.5 : 44.5로서 각 대학들이 상담원을 배정함에 있어 '성별 안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9 >, < 표 2-10 > 참조).

< 표 2-9 > 일본 국립대학의 상담원 배정 현황

상담원을 배정한 학교 (%)	총 상담원 수	1 대학 평균 상담원의 수
101개 대학 (100.0%)	2,669명	26.4명

자료: 위의 표와 동일.

< 표 2-10 > 일본 국립대학의 상담원 구성단위

총 상담원 수	성 별 구 성		지 위 별 구 성		
	남	여	교 원	직 원	기 타
2,669 명 (100.0%)	1,482 (55.5)	1,187 (44.5)	1,745 (65.3)	893 (33.5)	31 (1.2)

자료: 위의 표와 동일.

일본 대학에서는 전문상담원이 아니라 일반 교직원이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1차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원들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담원이나 조사위원들을 위한 지침서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또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하여 예방교육의 실시 비율이 매우 높고 특히 교직원 교육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2-11 > 참조). 이것은 문부과학성의 규정이 교직원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담이나 조사를 맡은 교직원에 대한 연수나 워크숍을 통해 재직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표 2-11 > 일본 국립대학의 성희롱 예방 사업

사업 항목		실시한 대학	미실시 대학	실시 비율 (%)
예방교육 실시 (강연회 포함)	신임교직원	96	5	(95.0)
	재직교직원	88	13	(87.1)
	학 생	52	49	(51.5)
팸플렛 등의 제작·배포	교 직 원	85	16	(84.2)
	학 생	89	12	(88.1)
포스터 등의 게시	교 직 원	39	62	(38.6)
	학 생	47	54	(46.5)
조사표에 의한 의식 조사	교 직 원	17	84	(16.8)
	학 생	40	61	(39.6)

자료: 위의 표와 동일.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건 관련 상담 건수는 많지 않은데, 2001년의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응한 101개 대학 중 40개 대학(39.6%)은 상담 건수를 보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대학들의 상담건수는 연평균 6.7건에 그치고 있다. < 표 2-12 >를 보면, 전체 상담 중 교직원이 관련된 사건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처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직원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게다가 공식적인 해결의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면에서 이것은 학생들의 피해 상담 신청이 교직원과 관련된 사건처럼 심각한 사건에 한정되고 있으며, 상담기구를 따로 두지 않는 현재의 상담체계가 '학생-학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기에 용이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2002년의 조사에서 보면, 일본의 대학은 교직원 사건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학생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학사 관련 조치나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3 > 참조).

< 표 2-12 > 일본 국립대학의 사건 관련 상담 및 처리

전체 상담건수 (학교수)	상담한 사건들의 성격				사건 처리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학생	학생 학생	계	상담을 통해 해결된 사건	여하한 처분 을 통한 해결	대응 중에 있는 사건	계
414 (61)	63 (34)	163 (50)	64 (29)	290	169 (44)	49 (33)	64 (31)	282

자료: 위의 표와 동일. 전체 상담 건수와 사건 및 처리 내역의 합계가 불일치하는 것은 처리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 표 2-13 > 일본 국립대학의 피해자 보호조치(1999. 11-2002. 11)*

단위: 건, ()는 학교수

학업 관련 보호 조치		가해자에 대한 조치	
지도교수의 변경	44 (38)	피해자와의 접촉을 금지	42 (34)
학부·학과와의 변경	0 (0)	배치 전환·전직	9 (8)
성적 재평가	2 (2)	강의·논문지도로부터 제외	32 (28)
휴학 인정	4 (4)	각종 위원회로부터 제외	9 (7)
휴학 연장	2 (2)	세쿠하라예방교육 연수	10 (10)
희망시 복학	0 (0)		
계	52 (38)	계	102 (49)

자료: 文部科學省, 「平成14年度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防止等に関する取組
状況調査 結果概要」, 2002에서 작성. * 99개 대학의 중복응답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하여 주요 정책의 심의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정책운영기구(세쿠하라방지위원회 또는 대책위원회 등)의 역할과 활동에 실리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또한 교내의 겸임상담원들로 상담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기구가 설치된 곳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담기구가 피해자 상담 및 사건 조사에 있어서 전문성과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사례를 보면, 정책운영기구가 중심이 되는 구조일지라도 조직의 편제가 사뭇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와세다(早稻田)대학의 경우에는 '세쿠하라방지위원회'와 '세쿠하라정보위원회'의 두 기구가 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전자가 상담, 조사, 교육, 예방, 피해구제 등의 기본 정책에 관한 심의와 결정을 맡고 후자는 그 실무와 학내외의 제휴 및 연락 사무 등을 담당하되, 상담은 주로 교내의 겸임상담원이 맡아 수행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쿄(東京)대학의 '하라스멘토방지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구조의 복잡성이 높은 편으로, 위원회의 산하에 교내 겸임상담장구들 간의 연락 조정을 위한 '상담원회의'를 비롯하여 '조사위원회', '조정위원', '전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또한 '하라스멘토방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여 전문성을 보강하고, 최근에는 교내의 겸임상담체제와 별도로 '하라스멘토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미 남녀평등위원회나 인권위원회가 있는 대학에서는 이런 기구들이 정책운영기구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 야마구치(山口) 대학에서는 '이퀄파트너쉽위원회'가 남녀평등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는 한편 세쿠하라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교내 겸임상담원의 '상담창구'와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양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달리 오사카(大阪)대학은 인권위원회가 정책운영기구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세쿠하라상담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담실장 외에 두 명의 상담소 부실장을 두고 총장이 지명하는 자와 인권문제위원회의 '세쿠하라문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부실장으로 위촉한다. 소위원회에는 상담소에 배치된 전문상담원과 교내 상담원들이 들어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위원 외에 임상심리, 법학, 여성학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외국과 한국의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정책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 캐나다, 일본은 모두 성적 괴롭힘에 관한 법제화를 토대로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나라들에서 교육 서비스의 수혜자인 학생을 포함하는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법 외에 '교육기관'을 포괄할 수 있는 다른 입법적·행정적 장치나 판례의 정립이 필요하였다. 캐나다의 경우에 대학 정책은 '인권법'처럼 보호 대상이나 적용 영역이 가장 넓은 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행정 '규칙'과 '규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본다면 교직원이 관련되지 않은 학생-학생의 관계에 대한 피해 구제 기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인권법'이나 미국의 '민권법'은 '괴롭힘(harassment)'의 근거를 '성' 이외에도 '성적 선호', '인종' 등으로 확장하기에 용이하다. 반면에, 우리의 '남녀차별금지법'은 적용 범위가 고용관계를 넘어서는 점에서는 '인권법'과 유사하지만, 동성 간의 성적 괴롭힘을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괴롭힘'과 연관된 사회적 차별의 근거를 보완 또는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 정책의 배경에 놓인 법적 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이념과 입장의 표현이며, 문제 해결의 의지일 것이다. 외부의 법제도적 환경이 대학의 자치와 문제해결의 의지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하는 것 역시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의 대학들의 정책 수립 배경에서 사건들의 공론화와 학생운동의 동원(mobilization) 양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점은 캐나다와 미국보다 오히려 후발 주자인 일본과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활성화된 반성폭력운동의 연장선에서 성적 괴롭힘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성폭력' 개념이 대학사회에 수용되었고, 이것은 학생들의 '반성폭력학칙 제정 운동'을 통해 각 대학들의 규정에 일정하게 반영되었다. 이처럼 '성적 괴롭힘'의 문제가 성폭력의 확장된 개념 안에 자리잡게 된 것, 그리고 대학 정책의 차원에서 일정하게 제도화된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될 만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 개념의 확대.
성폭력 개념의 확대. 성폭력 개념의 확대. 성폭력 개념의 확대.
성폭력 개념의 확대. 성폭력 개념의 확대. 성폭력 개념의 확대. 성폭력 개념의 확대.

'성폭력' (성폭력 사건)

3. 국내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규정 분석

1) 규정 분석의 개요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각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규정(이하 규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분석의 대상을 성희롱·성폭력 규정을 제정한 전국 4년제 대학의 정책으로 한정하고, 2002년 6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집된 전국 4년제 대학의 규정 및 학칙을 관계기관의 협조 아래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2002년 6월 현재 확인된 전국의 대학은 총 352개로 4년제 대학은 193개 학교인데, 4년제 대학 중 규정을 제정하거나 학칙의 개정에 반영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학교는 176개 교(91.9%)이다. 학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본추출이 아닌 전수 조사의 방식으로 176개 대학의 규정과 학칙을 검토하였고, 2003년에 제정된 규정 2개를 자료로 추가하였다.

예비 검토의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규정에 담았으나 일부는 학칙으로 대신한 경우도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학칙에 한두 줄의 조항을 삽입한 경우는 제외하고, 성희롱·성폭력의 정의와 기구 및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한 경우는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규정 내용의 분석은 우선 세부사항에 관한 총 45개 문항의 내용분석 기록지를 작성하고, 각 대학의 규정들을 연구자들이 직접 검토하여 해당 사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별첨자료 * 참조). 그리고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조사, 교차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질문지가 포괄하지 못하는 규정의 특이사항들은 별도로 기록하여 분석의 서술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분석된 대학의 규정은 총 160개이며, 이는 전체 4년제 대학의 90.9%를 차지한다. 분석 자료의 기본 사항을 대학 분류, 대학 소재지, 공학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 표 3-1 >과 같다.

< 표 3-1 > 분석 자료의 기본 사항

		학교 수	비율(%)
대학 분류	국/공립대학	40	25.0
	사립대학	120	75.0
대학 소재지	수도권	60	37.5
	비수도권	100	62.5
공학 여부	남녀공학	154	96.3
	여자대학	6	3.8
총계		160	100.0

III장에서 다룰 규정 분석은 주로 '규정에 제시된' 사항들에 의존하여 정책을 평가하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즉, 규정에 명시한 제도와 기구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나, 반대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학별로 운영하는 비공식적·공식적 제도와 절차를

포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학내 성희롱·성폭력을 해결하려는 대학의 의지의 표현이자 대학에 실천을 강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다. 따라서 규정의 체계와 일관성, 그리고 규정이 보장하고 있는 기구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현재의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해결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규정에 대한 분석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다소 서둘러 제정된 규정들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 규정 제정년도

규정의 제정은 정책의 기본 골격을 세우는 일이며,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각 대학들의 규정은 대체로 정책의 목적, 문제 행위의 정의 및 판단 기준, 기구의 설치와 운영, 고충처리 절차의 요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규정 내용에 관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 대학들의 규정 제정년도의 추이를 살펴보자. 규정의 제정에는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과 아울러 90년대 말 법률의 제·개정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1999년 6월에 교육부가 통지한 「남녀차별방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안)」과 2001년 5월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은 규정 제정의 추이에서도 그 영향을 읽을 수 있다. < 표 3-2 >를 보면, 1998년까지만 하더라도 규정을 제정한 학교는 단 두 곳 뿐이었으나 규정을 제정한 대학 중 3/4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다수(76.9%)가 2001년에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 이후에는 오히려 제정 빈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2 > 규정 제정년도

	학교 수	비율(%)
1998년	2	1.3
1999년	10	6.3
2000년	18	11.3
2001년	123	76.9
2002년	5	3.1
2003년	2	1.3
총계	160	100.0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규정이 제정되는 데에는 학칙제정운동보다는 교육부 지침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녀차별금지법」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 지침을 아래로부터의 운동적 압력과 구분되는 위로부터의 제도적 압력으로만 환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역시 90년대 반성폭력 운동의 포괄적인 성과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교육부 권고안이 내려온 지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규정 제정에 동참한 것

을 긍정적인 성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미 학칙제정운동이 시작되었던 학교의 경우에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학생과 학교 당국 사이에서 규정 시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반면,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교육부 지침 이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동안 충분한 의견의 수렴이 없이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규정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분류, 대학소재지, 남녀공학에 따라서 규정 제정 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자. < 표 3-3 >이 보여 주듯이 2000년까지 규정을 제정한 학교는 국·공립대학이 1999년까지 5개 교, 2000년 5개 교로 총 10개 교(25%)인데 비해, 사립대학은 99년까지 7개 교, 2000년 13개 교로 총 20개 교(16.6%)이다. 범주 내 비율의 측면에서는 국·공립대가 사립대의 수준을 조금 넘어선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규정 제정년도에 있어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은 공·사립 대학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미국과 대비된다.

< 표 3-3 > 대학 분류에 따른 규정 제정년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총계(%)
1999년까지	5 (12.5)	7 (5.8)	12 (7.5)
2000년	5 (12.5)	13 (10.8)	18 (11.3)
2001년	29 (72.5)	94 (78.3)	123 (76.9)
2002년 이후	1 (2.5)	6 (5.0)	7 (4.4)
총계	40 (100)	120 (100)	160 (100)
χ^2			2.413

* $p < .05$ ** $p < .01$ *** $p < .001$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70% 이상이 2001년에 규정을 제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2000년까지 규정을 제정한 학교는 10개 교(16.7%)인 반면, 비수도권의 대학은 20개 교(20%)가 2001년 이전에 이미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수와 비율 모든 면에서 수도권보다 앞선다. 반대로 2002년 이후에 규정을 제정한 학교가 수도권의 경우 6개 교(10%)인데 비해 비수도권 대학은 1개 교(1%)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규정 제정 년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남녀공학의 여부이다. < 표 3-5 >에서 볼 수 있듯이, 남녀공학의 경우에는 2000년까지 30개 교(19.5%)가 규정을 제정한 반면, 여자대학은 2001년 이전에 규정을 제정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여자대학이 남녀공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정 제정 시기가 다소 늦다고 볼 수 있다.

< 표 3-4 > 대학 소재지에 따른 규정 제정년도

	수도권(비율%)	비수도권(비율%)	총계(비율%)
1999년까지	3(5.0)	9(9.0)	12(7.5)
2000년	7(11.7)	11(11.0)	18(11.3)
2001년	44(73.3)	79(79.0)	123(76.9)
2002년 이후	6(10.0)	1(1.0)	7(4.4)
총계	60(100)	100(100)	160(100)
χ^2			7.914*

* $p < .05$ ** $p < .01$ *** $p < .001$

< 표 3-5 > 공학여부에 따른 규정 제정년도

	남녀공학(비율%)	여자대학(비율%)	총계(비율%)
1999년까지	12(7.8)	0(0.0)	12(7.5)
2000년	18(11.7)	0(0.0)	18(11.3)
2001년	118(76.6)	5(83.3)	123(76.9)
2002년 이후	6(3.9)	1(16.7)	7(4.4)
총계	154(100)	6(100)	160(100)
χ^2			3.355

* $p < .05$ ** $p < .01$ *** $p < .001$

3) 규정 제목

규정의 제목은 용어 정의와 어느 정도 연동되면서도, 대학 나름대로의 정책적 문제의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각 대학이 채택한 규정들의 제목을 보면 성폭력만 명시한 학교가 67개 교(43.1%)로 제일 많고, 성폭력과 성희롱을 함께 명시한 경우가 65개 교(40.6%)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제목에 성희롱만을 명시한 학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각 대학들의 규정 제목에는 '폭력', '성문제', '성범죄', '남녀차별', '성차별', '성 정체성' 등 다양한 어휘들이 등장한다.

< 표 3-6 > 규정 제목

	학교 수	비율(%)
성폭력만 명시	67	41.9
성희롱만 명시	19	11.9
함께 명시	60	37.5
기타(별도기재)	14	8.8
총계	160	100

제정 년도에 따라 규정 제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 3-7 >을 보면, 2000년까지 제정된 총 30개의 규정 중에 60%에 달하는 18개 교가 제목에 성폭력만 명시한 것에 비해, 성폭력과 함께 성희롱을 명시하거나 성희롱만 명시한 경우는 7개 교로 전체의 23.3%에 불과하다. 반면에, 2001년 이후에 규정을 제정한 학교들의 경우에는 순서가 뒤바뀌어, 규정 제목으로 성폭력과 성희롱을 함께 명시한 사례가 가장 많고

(54개교, 41.5%) 성폭력만 명시한 경우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49개 교, 37.7%). 성희롱만 명시한 경우도 수나 비율의 측면에서 모두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카이제곱 값 역시 10.825로 5%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3-7 > 제정년도에 따른 규정 제목

	2000년까지(비율%)	2001년 이후(비율%)	총계(비율%)
성폭력만 명시	18(60.0)	49(37.7)	67(41.9)
성희롱만 명시	1(3.3)	18(13.8)	19(11.9)
함께 명시	6(20.0)	54(41.5)	60(37.5)
기타(별도기재)	5(16.7)	9(6.9)	14(8.75)
총계	30(100)	130(100)	160(100)
χ^2			10.825*

* $p < .05$ ** $p < .01$ *** $p < .001$

이처럼 2001년 이전에 규정을 제정한 경우에는 성폭력이 우세하였으나 2001년 이후에 성희롱의 개념이 더욱 중심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역시 「남녀차별금지법」의 영향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곧 2001년 이전에 제정된 규정에 영향을 준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의 주요 슬로건이 '성폭력'학칙제정이었기 때문에 성희롱보다는 성폭력이 더 중심적이었던 반면, 2001년부터 규정 제정에 영향을 미친 「남녀차별금지법」의 핵심 개념이 '성희롱'이므로 성희롱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를 좀 더 분명히 살펴보기 위해서 규정 제목에 따라 근거 법의 채택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 3-8 > 규정 제목에 따른 근거 법 채택

	성폭력만 명시	성희롱만 명시	함께 명시	기타(별도기재)	총계
남녀차별금지법	7(10.4)	8(42.1)	28(46.7)	3(21.4)	46(28.8)
성폭력특별법	0(0.0)	0(0.0)	1(1.7)	1(7.1)	2(1.3)
둘 다	0(0.0)	0(0.0)	4(6.7)	0(0.0)	4(2.5)
법령명시 안함	60(89.6)	10(52.6)	26(43.3)	9(64.3)	105(65.6)
기타	0(0.0)	1(5.3)	1(1.7)	1(7.1)	3(1.9)
총계	67(100)	19(100)	60(100)	14(100)	160(100)
χ^2					43.046***

* $p < .05$ ** $p < .01$ *** $p < .001$

< 표 3-8 >이 보여주듯이 제목에 성폭력만 명시한 규정의 절대 다수인 60개(89.6%)가 법령을 명시하지 않은데 비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함께 명시한 경우는 「남녀차별금지법」을 명시한 사례가 가장 많다(28개 교, 46.7%). 그 밖에 성희롱만 명시한 규정들은 「남녀차별금지법」을 명시한 경우(8개교, 42.1%)와 법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10개 교, 52.6%)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남녀차별금지법」을 의식한 학교들의 경우 제목에 성희롱을 명기하는 경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폭력과 성희롱을 함께 명기한 규정들 중에서 「성폭력특별법」을 명시하거나 「남녀차별금지법」과 「성폭력특별법」 둘 다를 명시한 사례들도 있어, 법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다른 규정들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남녀고용평등법」을 명시한 학교들도 상당수 있었다. 카이제곱 값 역시 43.046으로 매우 높아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아주 분명하다. 덧붙여 근거 법 채택의 여부만 따로 떼어두고 살펴보면, 근거 법을 명기하지 않은 규정이 전체의 65.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남녀차별금지법」이 28.8%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2001년 이전에 규정을 제정한 학교들의 경우 규정 제목에 성폭력만 명기하는 경향이 크며, 「남녀차별금지법」을 의식하기보다는 대학 차치규약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학 내 반성폭력학칙 제정운동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01년부터 규정을 제정한 학교들의 경우에는 규정 제목에 성폭력과 성희롱을 함께 표기하거나 성희롱만 제시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으며, 근거 법을 명시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였다.

4) 용어 정의 : 성폭력과 성희롱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개념은 예방과 처리의 대상이 되는 문제의 행동을 적시하고 그것을 고지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용어의 정의는 각 대학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정립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분석의 지점이기도 하다. 우선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의 종류를 < 표 3-9 >를 통해 보면, 성폭력만 정의한 규정이 가장 많고(69개 교, 43.1%), 성희롱·성폭력을 함께 정의하는 규정이 그 다음으로 많다(65개 교, 40.6%). 그 외에 기타와 성희롱만 정의하는 경우가 각각 14개 교(8.8%), 9개 교(5.6%)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기타'의 경우로 제목에 남녀차별이 포함된 학교들의 경우 용어정의에서도 '남녀차별'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 외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폭력', '성폭행' 등이 용어 정의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 표 3-9 > 용어 정의

	학교 수	비율(%)
성폭력만 명시	69	43.1
성희롱만 명시	9	5.6
성폭력/성희롱	65	40.6
기타(별도기재)	14	8.8
용어 정의 부재	3	1.9
총계	160	100

< 표 3-9 >를 앞의 < 표 3-6 >과 비교해보면, 규정 제목과 규정의 개념 정의가 대체로 겹치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제목에 성희롱만 명기

한 규정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마지막으로 규정이 용어 정의를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3사례 있다. 이런 규정들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관습적인 정의에 기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규정을 적용할 때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용어가 어떤 범위와 내용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를 좀 더 자세히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가 < 표 3-10 > 이다.

< 표 3-10 > 각각의 용어 정의 내용

		학교 수	법주 내 비율(%)	전체 비율(%)
성폭력 의미	성폭력=광의	68	98.6	42.5
	기타	1	1.4	0.6
	총계	69	100	43.1
성희롱 의미	성희롱=광의	5	55.6	3.1
	성희롱=법적 정의	3	33.3	1.9
	기타	1	11.1	0.6
	총계	9	100	5.6
성폭력/성희롱 의미	성폭력=범죄 성희롱=법적 정의	4	6.2	2.5
	성폭력=범죄 성희롱=광의	54	83.0	33.8
	기타	7	10.8	4.4
	총계	65	100	40.6

우선, '성폭력만 정의한 경우'는 성폭력을 기존의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상의 법적인 내용으로 정의하지 않고 '넓은 의미로 정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1998년에 제정된 부산대의 규정은 "성폭력이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성희롱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성폭력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2000년에 제정된 한양대의 규정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 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제 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성희롱과 성폭력을 함께 정의한 경우'에는 성폭력의 의미가 대체로 '성폭력특별법'이나 '형법' 상의 범죄로 좁게 규정되는 반면 성희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식의 개념상의 분업이 발생한다. 이 때의 '성희롱' 개념은 성폭력만 정의한 규정들의 성폭력 개념과 유사하다. 때로는 성희롱, 성폭력 모두 포괄적인 정의를 따르는 사례들도 있으나 이는 극히 소수이다. '성희롱만 정의'한 규정들도 성희롱이 법적 개념을 넘어서 포괄적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5 사례로 전체 9개 중에 과반수를 넘지만 이 범주에서 성희롱이 법적인 범위로 정의되는 경우도

3 사례가 있다. 성희롱·성폭력을 함께 정의한 규정에도 양자를 모두 법적인 개념으로 한정시킨 경우가 4 사례가 발견되었다.

규정 제정년도에 따라 용어 정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정년도에 따른 용어 정의의 차이를 보여주는 < 표 3-11 >은 제정년도에 따른 규정 제목의 차이를 보여주는 < 표 3-7 >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 표 3-11 > 제정년도에 따른 용어 정의

	2000년까지(%)	2001년 이후(%)	총계(%)
성폭력만 명시	19(65.5)	50(39.1)	69(43.9)
성희롱만 명시	1(3.4)	8(6.3)	9(5.7)
성폭력/성희롱	5(17.2)	60(46.9)	65(41.4)
기타(별도기재)	4(13.8)	10(7.8)	14(8.9)
총계	29(100)	128(100)	157(100)
χ^2			10.052*

* $p < .05$ ** $p < .01$ *** $p < .001$

2001년까지 제정된 규정의 65.5%에 달하는 19개 대학들이 성폭력만 정의하고, 성희롱·성폭력을 함께 정의하거나 성희롱만 정의하는 경우는 17.2%, 3.4%로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2001년부터는 상황이 역전되어 성희롱·성폭력을 함께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가장 많고(60개 교, 46.9%), 성폭력만 정의한 경우가 39.1%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성희롱만 정의한 경우는 여전히 소수이긴 하지만 8개 교로, 2001년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러한 차이 역시 2001년 이후에 제정된 규정의 경우 '남녀차별금지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용어 정의에 따라 규정 근거 법률 어떻게 다르게 채택하고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 3-12 > 역시 < 표 3-8 >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규정에 성폭력만 정의한 경우의 90% 이상이 법령을 명시하지 않은 데 비해, 성희롱·성폭력을 함께 정의한 경우에는 '남녀차별금지법'을 명시한 사례가 가장 많다(30개 교, 46.2%).

< 표 3-12 > 용어 정의에 따른 근거 법 채택

	성폭력만 명시(%)	성희롱만 명시(%)	함께 명시 (%)	기 타 (%)	총 계 (%)
남녀차별금지 법	6(8.7)	2(22.1)	30(46.2)	7(50.0)	45(28.7)
성폭력특별법	0(0.0)	0(0.0)	2(3.1)	0(0.0)	2(1.3)
둘 다	0(0.0)	0(0.0)	4(6.2)	0(0.0)	4(2.5)
법령명시 안함	63(91.3)	6(66.7)	27(41.5)	7(50.0)	103(65.6)
기타	0(0.0)	1(11.1)	2(3.1)	0(0.0)	3(1.9)
총계	69(100)	19(100)	60(100)	14(100)	160(100)
χ^2					46.623***

다음으로 규정들이 중심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어떤 하위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적자기결정권, 상대방 동의, 피해자 판단, 환경형, 2차 가해 등이 그것인데, 이상의 하위 개념들은 모두 서울대의 규정에서 성희롱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 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감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2000년에 제정된 서울대 규정은 '성희롱·성폭력을 함께 정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성폭력을 범죄로 좁게 정의하지만, 대신 성희롱을 넓게 정의하여 다양한 하위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하위 개념들에 주목하는 까닭은 2001년 이후 상당수의 대학 규정들에서 이와 유사한 정의의 형태가 나타나지만, 이 하위 개념들 어떤 식으로 취사선택되는가를 보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 항목들 외에 정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 표 3-13 >과 같다.

< 표 3-13 > 용어 정의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들(중복응답)

		학교 수	비율(%)
성적자기결정권	있다	118	73.8
	없다	42	26.2
	총계	160	100
상대방 동의	있다	88	55.0
	없다	72	45.0
	총계	160	100
피해자 판단	있다	52	32.5
	없다	108	67.5
	총계	160	100
환경형	있다	78	48.8
	없다	82	51.2
	총계	160	100
2차 가해	있다	98	61.3
	없다	62	38.7
	총계	160	100
예시제시여부	있다	17	10.6
	없다	143	89.4
	총계	160	100

먼저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가 118개 교(73.8%)로, 그렇지 않은 경우인 42개 교(26.2%)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사실은 '성폭력특별법'이나 '남녀차별금지법'이 90년대 여성운동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두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을 결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다. 이는 규정 제정에 영향을 미친 대학 내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희롱·성폭력을 정의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규정은 88개로 그렇지 않은 72개 교보다 약 10% 정도 앞선다. 반면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성폭력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규정은 52사례(32.5%)로, 그렇지 않은 경우(108사례, 67.5%)에 크게 뒤진다. 환경형 성희롱·성폭력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78개 교(48.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상당수의 학교가 이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차 가해를 성희롱·성폭력 범주에 포함시키는 대학이 과반수를 넘는다(61.3%).

이상의 결과는 성희롱·성폭력을 정의함에 있어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한 개념과 그렇지 않은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가장 적게 수용되는 개념은 역시 피해자 판단이다. 이는 많은 규정들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편파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개념을 수용하는 것을 꺼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몇몇의 대학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규정상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는 반성폭력 운동의 중심적인 개념이 제도로 수용된 경우라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적게 수용되는 개념이 바로 환경형 성희롱·성폭력이다. 환경형 성희롱·성폭력은 여전히 그 개념의 외연이 다소 넓고 모호하기 때문에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표 3-14 >에서 용어정의의 중심 개념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의 수용 여부를 보면, 중심 개념으로 성폭력을 제시하는 경우와 성희롱·성폭력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 79.7%와 78.5%가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을 도입하는데 비해, 성희롱만 명시하는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도입하는 비율이 33.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 표 3-11 >에서 보았듯이 성희롱만 명시하는 규정의 대다수가 2001년 이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규정들에 비해 반성폭력학칙제정운동의 영향은 적게 받은 반면, '남녀차별금지법'을 더 많이 의식했다. 따라서 성희롱만 명시한 규정들의 경우 학칙제정운동이 핵심적으로 제시했던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표 3-14 > 중심 개념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의 포함 여부

		성폭력만 명시 (%)	성희롱만 명시 (%)	성폭력/성희롱 (%)	기타 (%)	총계 (%)
성적자기결정권	있다	55(79.7)	3(33.3)	51(78.5)	7(50.0)	116(73.9)
	없다	14(20.3)	6(66.7)	14(21.5)	7(50.0)	41(26.1)
	총계	69(100)	9(100)	65(100)	14(100)	157(100)
χ^2						13.729**

* $p < .05$ ** $p < .01$ *** $p < .001$

5) 규정의 적용 대상

우리나라의 상당수 대학들은 교내 구성원은 물론 신고인과 피신고인 중 한 사람만 해당 학교의 구성원인 경우에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내 구성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교내의 적용 범위를 학생과 정규직 교직원에 한정하거나 적용 대상을 전혀 명시하지 않는 학교도 소수나마 존재한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여 조사·처리가 필요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적용 대상의 범위에 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몇몇 대학들은 졸업 또는 기타의 이유로 지위가 변동하더라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가해 행위를 한 자가 교내 구성원 신분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학내 기관에 의한 조사와 처리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교내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교내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딜레마이며 현실적인 수단은 많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단서 조항은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 표 3-15 > 규정 적용 대상

	학교 수	비율(%)
학생·정규직교직원	4	2.5
학생·교직원일반	56	35.0
외부인까지 포함	99	61.9
적용 대상 명시 없음	1	0.6
	160	100

6) 기구와 조직체계

(1) 상담기구의 형태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구체적인 일을 수행해 나가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상담원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최소한의 요건이라면, 대학 내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규정을 만들고 본다면, 규정을 제정한 대학들 중 89.7%가 상담창구를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과연 이런 상담창구들이 실제로 기능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상담원을 비롯하여 상담기구의 업무 성격이나 위상은 다른 기구들과의 관계라든가 조직 체계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적어도 규정은 이런 조직 체계 속에서 상담기구의 위상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는 ① 상담원만 있는 경우, ② 다른기관의 산하에 있는

상담기구(관리기구부속상담실), 그리고 ③ 다른 관리기관에 속하지 않은 상담기구(독립상담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표 3-16 >을 보면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관리기구부속상담실로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4개 교, 58.8%). 관리기구부속상담실은 주로 학생생활연구소나 학생상담센터 등 기존 상담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에 여학생처 또는 여학생실, 보건진료소, 학생과 또는 학생처, 행정처 등에 소속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독립상담기구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로(40개 교, 25%), 여기서 독립상담기구란 다만 관리기구의 산하에 있지 않은 경우를 지칭할 따름이다. 규정상의 독립성이 실질적인 독립성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정 분석을 넘어서 면접 등의 조사방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기구를 따로 두지 않는 학교(18개 교, 11.3%)는 대체로 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처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성윤리위원회 등의 정책·운영기구에 비중을 두고 상담기구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처나 학생과 직원에게 상담을 하거나 교원은 교무처, 학생은 학생지원처, 직원은 사무처(총무처)에서 상담하도록 기대된다. 상담기구를 따로 설치하지는 않으나 학생생활연구소 등 기존 상담기구나 정책·운영기구에 상담원(또는 간사)만 두는 경우(8개 교, 5.0%)도 있고, 사건 신고는 학생처로 받고 조사는 대책위원회가 맡는 협업 유형을 보이는 사례들도 몇몇 존재한다.

< 표 3-16 > 상담기구 설치 여부 및 위상

	학교 수	비율(%)
없음	18	11.3
상담원만	8	5.0
관리기구부속상담실	94	58.8
독립상담기구	40	25.0
	160	100

대학분류와 소재지에 따라 상담기구설치 여부 및 위상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 3-17 >을 보면, 국·공립대학은 단 한 학교(2.5%)를 제외하고 모두 상담원이나 상담기구를 배치 조항을 둔 것에 반하여 사립대학은 14.2%가 상담기구 관련 조항을 두지 않았다.

관리기구부속상담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29개 교, 72.5%), 독립상담기구가 7개 교(17.5%)로 큰 차이로 뒤를 따르고 있다. 또 상담기구가 아예 없거나 상담원만 있는 경우는 각각 1개 교, 3개 교로 소수에 불과하다. 사립대학도 관리기구부속상담실이 65개 교(54.2%)로 과반수를 넘어서나 독립상담기구도 33개 교(27.5%)로 국·공립대학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기구를 아예 갖추지 않거나 상담원만 있는 경우가 각각 17개 교, 5개 교로 국·공립대학에 비해 많다. 따라서 국·공립대학이 관리기구

부속상담실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사립대학은 양분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표 3-17 > 대학분류에 따른 상담기구설치여부-위상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총계(%)
없음	1(2.5)	17(14.2)	18(11.3)
상담원만	3(7.5)	5(4.2)	8(5.0)
관리기구부속상담실	29(72.5)	65(54.2)	94(59.1)
독립상담기구	7(17.5)	33(27.5)	40(24.5)
총계	40(100)	120(100)	160(100)
χ^2			7.213

* $p < .05$ ** $p < .01$ *** $p < .001$

< 표 3-18 > 대학 소재지에 따른 상담기구 설치여부-위상

	수도권(%)	비수도권(%)	총계(%)
없음	10(16.7)	8(8.0)	18(11.3)
상담원만	3(5.0)	5(5.0)	8(5.0)
관리기구부속상담실	27(45.0)	67(67.0)	94(59.1)
독립상담기구	20(33.3)	20(20.0)	40(24.5)
총계	60(100)	100(100)	160(100)
χ^2			8.260*

* $p < .05$ ** $p < .01$ *** $p < .001$

< 표 3-18 >에서 대학 소재지 별 상담기구의 설치 위상을 보면, 먼저 수도권 대학의 경우, 관리기구부속상담실이 27개 교(45%)로 가장 많지만 독립상담기구 역시 20개 교(33.3%)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비수도권 대학은 관리기구부속상담실의 형태를 취하는 대학이 67개 교(67%)로 과반수를 훌쩍 넘어서고, 20개 교의 학교(20%)가 취하고 있는 독립상담기구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수도권 대학들의 상담기구가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반면, 비수도권 대학 관리기구부속상담실의 형태로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대학의 규정들이 상담기구가 상담원의 자격을 명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표 3-19 >를 보면 전문상담원의 자격을 명기하고 있는 규정은 20개로 전체의 12.5%에 불과하다. 또한 전문상담원의 기준에 있어서도 각 학교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성폭력전문 상담원으로 명기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문상담원 으로부터 규정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한 경우들도 다수 있었다. 상담기구 설치여부-위상에 따라 상담원의 자격을 명기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해 보았으나 어떠한 의미 있는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다.

< 표 3-19 > 전문 상담원 명기 여부

	학교 수	비율(%)
명기함	20	12.5
명기하지 않음	140	87.5
총계	160	100

(2) 조사기구의 구성

대학내의 성희롱·성폭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는 최소한 세 가지 기능을 수행 하는 기구를 필요로 하며 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상담원, 상담실, 상담소와 같은 '상담기구'와 ② 사건의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조사기구', ③ 정책의 수립과 심의 주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정책운영기구'가 기본을 이룬다. 특히 조사기구의 구성 방식이나 전문가 참여 여부 등은 문제의 해결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표 3-22 > 조사기구의 구성

	학교 수	비율(%)
정책기구가 직접 조사	89	55.6
정책기구가 별도의 조사위 구성	30	18.8
상담소가 조사기구 구성	27	16.9
기타	14	8.8
총계	160	100

< 표 3-22 >를 보면 별도의 조사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정책·운영기구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학이 55.6%로 가장 많고, 정책기구가 별도의 조사기구(소위원회 등)를 구성하는 경우가 18.8%, 상담소가 조사기구를 구성하는 경우가 16.9%로 비슷한 수준이다. 기타의 경우로는 정책기구가 전문상담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대학부서에 조사를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고, 피신고인의 지위나 소속에 따라 각각의 관계기관에서 사건조사를 맡도록 규정한 학교들도 있었다.

상담기구 설치 여부 및 위상에 따라 조사기구의 구성 여부 및 방식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 3-23 >을 보면 정책기구가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빈도로 본다면 관리기구 부속 상담실의 형태를 취하면서 정책기구가 조사를 맡는 형태가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상담·조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독립상담기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상담소가 조사기구를 구성할 가능성

이 높다(19개 교, 47.5%). 따라서 독립기구 상담소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운영에 있어서 보다 많은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표 3-23 > 상담기구설치여부·위상에 따른 조사기구의 구성

	없음(%)	상담원만(%)	관리기구부속(%)	독립상담기구(%)	총계(%)
정책기구가 직접 조사	8(44.4)	4(50.0)	64(68.1)	13(32.5)	89(55.6)
정책기구가 조사기구 구성	2(11.1)	3(37.5)	18(19.1)	7(17.5)	30(18.8)
상담소가 조사기구 구성	0(0.0)	0(0.0)	8(8.5)	19(47.5)	27(16.9)
기타	8(44.4)	1(12.5)	4(4.3)	1(2.5)	14(8.8)
총계	18(100)	8(100)	94(100)	40(100)	160(100)
χ^2					69.831***

* $p < .05$ ** $p < .01$ *** $p < .001$

(3) 전문가 및 대학 구성원의 참여

각 기구에 전문가 및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정책·운영기구가 별도의 조사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표의 첫 번째 범주인 조사·정책·운영기구는 이에 해당된다. 정책·운영기구와 조사기구가 따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나누어 두 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참여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었다.

< 표 3-24 > 전문가 및 대학 구성원의 참여

	조사·정책·운영기구(%)	조사기구(%)	정책·운영기구(%)	없음(%)	총계(%)
전문가참여	16(10.0)	6(3.8)	29(18.1)	109(68.1)	160(100)
학생참여	76(47.5)	8(5.0)	48(30.0)	28(17.5)	160(100)
직원참여	43(26.9)	4(2.5)	29(18.1)	84(52.5)	160(100)
성별안배	62(38.8)	7(4.4)	38(23.8)	53(33.1)	160(100)

첫째,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규정은 통틀어 51사례(31.9%)로 전문가 참여에 대안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기구별로 보면, 정책·운영기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16사례, 10%)보다는 정책·운영기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중에서도 조사기구(6사례, 3.8%)보다는 운영기구(29사례, 18.1%)에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학생들은 다른 대학 내 구성원들에 비해 참여가 보장되는 비율이 높다. 세 기구 통틀어 학생참여가 보장되는 경우는 132사례(82.5%)다. 그 중에서도 정책·운영기구가 조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76개 사례(47.5%)로 가장 높고, 정책·운영기구가 조사기구를 따로 꾸

리는 경우에는 조사기구(8사례, 5%)보다는 정책·운영기구에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경우(48사례, 30%)가 더 많다. 그러나 학생 참여는 학생 관련 사건에만 해당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학교들이 다수 존재한다.

셋째, 세 기구에 직원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학교는 76개 교(47.5%)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성별안배를 명시하는 경우는 107개 교(66.9%)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 직원 참여나 성별안배는 학생 참여와 마찬가지로 정책·운영기구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보장되고, 정책·운영기구가 별도의 조사기구를 꾸릴 때 조사기구에 보장되는 경우가 가장 드물다. 학생참여의 경우와 유사하게 직원 참여 또한 직원 관련 사건으로만 제한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조사기구를 별도로 구성할 때 전문가 및 조사기구의 구성에 전문가와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주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 및 대학구성원 참여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상관분석을 실시해보았다. 참여 보장을 기구별로 나누지 않고 '있다'와 '없다'의 범주로만 나누었다. 그 결과, 전문가 참여는 대학구성원 참여와 별다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데 비해, 학생참여·직원참여·성별안배는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 표 3-25 > 전문가 및 대학 구성원의 참여의 상관관계

	전문가참여	학생참여	직원참여	성별안배
전문가참여	1			
학생참여	0.111443	1		
직원참여	0.080016	0.543***	1	
성별안배	0.113318	0.575***	0.408***	1

* $p < .05$ ** $p < .01$ *** $p < .001$

7) 사건 처리 절차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피해의 내용을 알아보고 경과와 진위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은 대학내 상담기구와 조사기구의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는 절차적인 요건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오해와 불신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기구는 사건의 조사 기간 동안 피해 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며,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사건의 조사·처리 기한이다.

그러나 < 표 3-26 >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의 처리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학교는 30.6%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의 처리 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어느 면에서 사건의 조사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처리 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신고인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일정을 공지하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표 3-26 > 처리기한 명시 여부

	학교 수	비율(%)
명시함	49	30.6
명시하지 않음	111	69.4
총계	160	100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 가해 행위가 인정되면 모종의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그 처리의 결과가 반드시 공식적인 징계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징계 이외에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반성문 제출, 공개사과, 재교육 < 표 3-28 >을 징계 이외에 각 대학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보면, 우선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반성문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21.9%이고 공개(실명)사과와 재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는 그보다 많아서 각각 29.4%, 30.0%이다. 사회봉사와 금전적 배상을 채택하고 있는 규정은 각각 38.1%, 40.6%로 상당수의 규정이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의 경우 가해자에 대해 사과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학교도 있었으며, 많은 대학들이 가해자가 보복 또는 재범시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 표 3-28 > 가해자에 대한 조치

		학교 수	비율(%)
반성문	있다	35	21.9
	없다	125	78.1
	총계	160	100
공개(실명)사과	있다	47	29.4
	없다	113	70.6
	총계	160	100
재교육	있다	48	30.0
	없다	112	70.0
	총계	160	100
사회봉사	있다	61	38.1
	없다	99	61.9
	총계	160	100
금전적 배상	있다	65	40.6
	없다	95	59.4
	총계	160	100

8) 피해자·피신고인의 권리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신고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알아보았다. 피해자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대학 규정은 신상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는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134, 83.8%), 대리인의 동석을 보장하는 경우는 4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요청할 기회를 보장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아 5%에 불과하다. 때로는 피해자에게 의무조항을 부과하기도 한다. 가령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징계조항을 명시하여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의무조항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고, 조사결과 피신고인이 무혐의로 결론 내려질 경우 신고인에게 주의경고 처분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은 사례도 있었다.

< 표 3-29 > 피해자 권리

		학교 수	비율(%)
신상비밀보장	있다	134	83.8
	없다	26	16.2
	총계	160	100
대리인동석	있다	69	43.1
	없다	91	46.9
	총계	160	100
이의/재심	있다	8	5.0
	없다	152	95.0
	총계	160	100
의무조항	있다	5	3.1
	없다	155	96.9
	총계	160	100
기타	있다	93	58.1
	없다	67	41.9
	총계	160	100

< 표 3-30 > 피신고인의 권리

		학교 수	비율(%)
신분비밀보장	있다	67	41.9
	없다	93	58.1
	총계	160	100
대리인동석	있다	15	9.4
	없다	145	90.6
	총계	160	100
이의/재심	있다	10	6.3
	없다	150	93.7
	총계	160	100
의무조항	있다	3	1.9
	없다	157	98.1
	총계	160	100
기타	있다	40	25.0
	없다	120	75.0
	총계	160	100

< 표 3-30 >을 보면 가해자의 신분 비밀을 보장하는 대학은 전체의 41.9%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 신분 비밀을 보장하는 비율(83.8%)보다는 약 40% 정도 낮은 수치다. 가해자가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례(15개 교, 9.4%)가 있으나, 이 역시 피해자 권리와 비교해보면 약 34% 정도 낮은 수치다. 그 외에 가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을 명시한 사례, 무혐의 판정시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한 사례, 가해혐의자 보호를 명시한 사례

등이 있었다.

(3) 피해자에 대한 지원

< 표 3-31 > 피해자 지원

		학교 수	비율(%)
법적지원	있다	93	58.1
	없다	57	41.9
	총계	160	100
의료지원	있다	7	4.4
	없다	153	95.6
	총계	160	100

< 표 3-31 >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명시하는 경우는 전체 규정의 절반을 넘고 있으나(93개, 58.1%), 반면에 의료지원을 명시한 경우는 7 사례에 불과했고(4.4%), 지원의 내용도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대학분류와 소재지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어떻게 달라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해 본 결과, 국·공립대학의 경우 사립대학에 비해 법적 지원을 명시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가 < 표 3-32 >다. 의료지원의 경우는 위 낙 수치가 적을뿐더러 대학 성격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 표 3-32 > 대학분류에 따른 법적지원 여부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총계
법적지원	있다	31(77.5)	62(51.7)	93(58.1)
	없다	9(22.5)	58(48.3)	67(41.9)
	총계	40(100)	120(100)	160(100)
χ^2				8.226**

* $p < .05$ ** $p < .01$ *** $p < .001$

이밖에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한 대학들도 있다. 대학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언급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조사위원회가 연대책임을 질 것을 명시한 사례, 동조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하는 사례, 징계에 시효가 없음을 명시한 사례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징계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사건이 교내에서 해결되지 않고 민·형사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징계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4. 맺으며

우리나라의 각 대학들에서는 1990년대말부터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처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98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한 초기의 대학 규정들은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았으며, 「남녀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이 효력을 발하는 1999년 6월을 분기점으로 현행법령의 영향이 점차 늘어났다. 2001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규정 제정의 움직임은 「남녀차별금지법」 등 현행 법령의 제정과 행정 지침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많지만, 그 내용의 주류는 여전히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성적 자율권과 연관된 넓은 의미의 성폭력 개념을 통해서 성적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을 포괄하고 있다. 2001년부터 규정을 제정한 학교들의 경우 규정 제목에 성폭력과 아울러 성희롱을 명기하거나 성희롱만 명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근거 법을 명시하는 경향 역시 증가하였다. 규정 제정년도에 있어서 국공립과 사립학교의 차이는 별로 없었으며, 남녀공학이 상대적으로 제정시기가 빠른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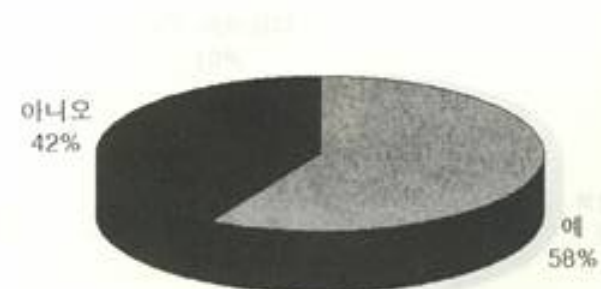
규정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들의 상담원 배치이나 상담창구 설치비용은 높은 편이며, 특히 국·공립대학에서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대학내 성희롱·성폭력상담소들은 학생생활연구소 등의 관리기구 부속 상담실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관리기구 부속 상담실에서 상담을 맡고 정책운영기구가 직접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담·조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상담원을 두거나 자격을 명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전문가, 학생, 직원, 성별 안배는 주로 정책운영기구로 이뤄질 뿐, 조사기구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의 보장에 관해서는 피신고인보다 피해자에 대한 항목이 더 많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의료적인 지원보다 법적 지원의 가성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국내외 대학의 정책과 규정에 대한 이 글의 분석은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정책의 윤곽을 보여주지만 현실의 복합적인 과정과 동학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의 실무자들이 예방교육, 상담, 조사, 사건 처리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지난한 고충은 오히려 규정으로 공식화되지 않는 정책의 실제 과정의 여러 가지 쟁점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 연구는 오늘의 발표에 담아내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와 쟁점들을 보완해야 할 작업을 남겨두었기에, 또 다른 걸음을 떼어놓는 출발의 기약으로 글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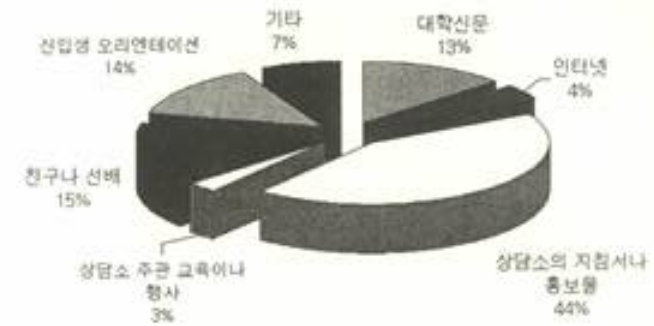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 내용분석 항목

대학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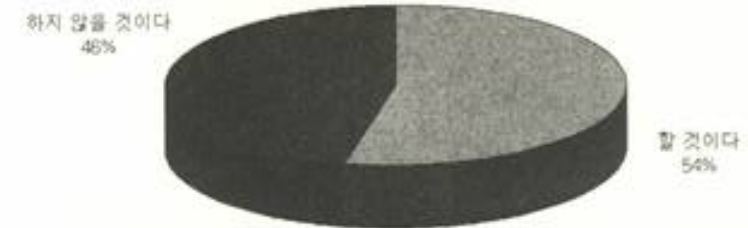
1)대학분류	①국·공립대학교			②사립대학교			
2)대학소재지	①수도권			②비수도권			
3)공학여부	①남녀공학			②여자대학			
4)제정년도	①1999년 이전	②1999년	③2000년	④2001년	⑤2002년	⑥2003년	
1)제목	①성폭력만 명시		②성희롱만 명시		③합계 명시		④기타(별도기재)
2)목적(근거법)	①남녀차별금지구제법	②성폭력특별법	③둘 다		④법령명시안함	⑤기타	
3)용어정의	①성폭력만		②성희롱만		③성폭력/성희롱		④기타(별도기재)
3-1)성폭력 의미	①성폭력=강의			②성폭력=성폭력범죄		③기타	
3-2)성희롱 의미	①성희롱=강의			②성희롱=법적정의에 충실		③기타	
3-3)성폭력·성희롱의미	①성폭력=범죄, 성희롱=법적정의			②성폭력=범죄, 성희롱=강의		③기타	
4)예시제시여부	①있다			②없다			
5-1)성적자기결정권	①있다			②없다			
5-2)상대방동의	①있다			②없다			
5-3)피해자판단	①있다			②없다			
5-4)환경형	①있다			②없다			
5-5)2차가해	①있다			②없다			
6)적용대상	①학생만		②학생·정규직교직원	③학생·교직원일반		④외부인까지 포함	
7-1)상당기구설치여부/위상	①없음		②상당원만	③관리기구부속상당실		④독립상당기구	
7-2)조사기구의 구성	①정책기구가 직접 조		②정책기구가 별도의 조사기구를 구성	③상당소가 조사기구 구성		④ 기타	
8)전문상담원명기여부	①명기함			②명기하지 않음			
9)조직구조특성	①상당소중심		②정책운영기구중심	③정책운영+관리기구		④기타	
10)전문가참여(복수응답)	①조사기구			②운영기구		③없음	
11)학생참여(복수응답)	①조사기구			②운영기구		③없음	
12)직원참여(복수응답)	①조사기구			②운영기구		③없음	
13)성별안배	①조사기구			②운영기구		③없음	
14-1)(피)신분·비밀보장	①있다			②없다			
14-2)(피)대리인동석	①있다			②없다			
14-3)(피)의무조항	①있다			②없다			
14-4)(피)이의·재심	①있다			②없다			
14-5)(피)기타	①있다			②없다			
15-1)(가)신분·비밀보장	①있다			②없다			
15-2)(가)대리인동석	①있다			②없다			
15-3)(가)의무조항	①있다			②없다			
15-4)(가)이의·재심	①있다			②없다			
15-5)(가)기타	①있다			②없다			
16-1)(피)법적지원	①있다			②없다			
16-2)(피)의료지원	①있다			②없다			
17-1)(가)반성문	①있다			②없다			
17-2)(가)공개(실명)사과	①있다			②없다			
17-3)(가)재교육	①있다			②없다			
17-4)(가)사회봉사	①있다			②없다			
17-5)(가)금전적 배상	①있다			②없다			
18)기한명시여부	①명시함			②명시하지 않음			
20)결과공표여부	①공표			②공표하지 않음			



만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학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알게 될 경우 상담소에 문의 할 것인가요?



상담소의 이름인 '서울대학교 성의종,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